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7월28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2.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1)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상정된 안건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 9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 9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 9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 9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 9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 9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 9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 9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9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1)	9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10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22
2.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22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22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22

(10시25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선관위 특검법안은 아직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 협의
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형사소송
법 개정안부터 심사하고 추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선관위 특검법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박형수 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그것도 위원장만 다 얘기하고 언론인 출입은 지금 마음대로 정하
는 거예요, 협의도 없이?

○박은정 위원 원래 위원장님 권한이에요.

○박형수 위원 협의를 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박은정 위원 의사일정 협의를 했잖아요.

○박형수 위원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할 거면 뭐하려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그걸……

○김태규 위원 바지저고리 세우고 할 거 같으면 저희들 소위를 뭐하러 합니까, 일방적
으로 회의 진행하시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침부터 불쑥 안건 바꾸고.

어제도 사실 회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잡아 가지고.

○소위원장 김승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고요.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홉 번째 법안소위인데요, 늦게 참여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늦게 참여한 게 왜 늦게 참여했어요?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늦게 참여한 것 아니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법사위 관행을 어긴 게 누구요?

○소위원장 김승원 55일, 60일이 지났습니다.

○박형수 위원 55일이 아니라 550일이라도 마찬가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걸 안 지키면 그것은……

○소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의 시간은 국민을 위한 시간입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기다리셨는데 왜 하루이틀을 못 기다리십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기다리지 않았습시다. 저희 9차 법안1소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시라고 저희가 촉구를 드렸고요. 국민의힘 전문위원과 보좌진들이 다 회의내용을 요약하고 보고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그 경과를 몰라서, 지금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처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하여튼 오늘은 그토록 원하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테니까 우선 그간의 경과를 수석전문위원께……

○박형수 위원 아니, 그전에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께 보고받으시고요.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의사를 변경한 것에 대해 갖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김태규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의사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할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박형수 위원께서 오늘 굉장히 흥분하고 계신데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주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앞으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고요. 일단 의사진행발언은 박형수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그 의사진행에 대해서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3분 드리시지요.

○박형수 위원 실컷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현재 위원장이 의사를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승원 자, 시작하신 겁니다.

○박형수 위원 오늘 일정을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보고받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김남희 위원 지금 시간 가고 있어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말씀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했어요?

○김남희 위원 예.

○박형수 위원 오늘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강력한 유감의 표시를 전합니다.

어제 간사님과 협의를 할 때 밤에 협의를 했어요. 밤에 협의를 할 때 제가 오늘 소위 회의는 오후에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오후에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지도부 간의 특검법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특검법 협상이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우리가 특검법 논의를 진행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제 특검법 논의를 하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정부기관에서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걸 확인해 가지고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오전에 확인할 시간을 줘야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10시에 꼭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오후에 하는 것이 여러모로 적절하다. 그리고 특검법은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지금 이견이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10시에 강행을 하고 의사일정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특검법을 먼저 하는 거를 형사소송법 먼저 하는 걸로 변경했어요.

그러면서 그 핑계는 뭐냐? 특검법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거 어제 제가 벌써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0시에 잡아 놓고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거는 애초에 형사소송법을 오늘 먼저 처리하려고, 의사일정 변경하려고 작정을 하고 어제 일정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가 협의할 때는 양당이 서로 사정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이 이 속내를 숨기고, 형사소송법에 우리 들러리 서라고 지금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보고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지금 형사소송법 때문에 이 회의가 결렬된다고 그러면 특검법 협상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하기로 국민들께 약속을 해 놓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위원장과 간사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정치력은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법부터 먼저 하겠다?

우리는 이 회의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차 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승원 한 분만 하시지요.

○박은정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좀 시간을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태규 위원님까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소위가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특검법 관련해서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아마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조금 늦춰졌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사는 지금 2주째, 오늘 이번 주에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0여 년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검찰 개혁의 국면에서 논점들이 많고 심사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형소법의 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2주 동안 소위 심사에 들어오지 않고 오늘 와서 지금 특검법 심사를 이유로 이걸 지연시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제안드립니다. 의사일정 의견을 한 분만 하시면 되지 여러 명이 다 돌아가면서 의사일정에 관한 의견을 다 내면 언제 이 심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고 형소법 심사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오늘 오서 가지고 형소법 심사를 막기 위해서 아마 오신 것 같은데 형소법 심사를 이렇게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형소법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도 첫 의사진행발언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 해 보시라고 기회는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규 위원 참 박하시네요. 3분이 그렇게 아까워서, 3분이 지연될까 봐서 저한테 의사진행발언 주지 말라고 하시니까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회의자료 지금 여기서 방금 받았습니다. 방금 받았는데, 이 회의자료에도 보면 제일 위에 우리 준비하시는, 행정부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제일 위에 먼저 올라와 있는 게 지금 특검법입니다, 그렇지요?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게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게 특검법부터 논의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 처리를 했겠지요. 그리고 이 뒤에 특검법 빼고 나니까 이만한 자료가 남습니다.

저는 어저께도요, 어저께 제가 처음 왔을 때 갑자기 특검법 얘기를 하길래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냐. 사전에 연락 주시고 좀 이렇게 하시면 저도 준비를 해 왔을 텐데 참 준비가 안 돼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체적인 반응이 이죽거림이나 아니면 놀림 아니면 너 앞으로 경험 많이 쌓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말을 할 기회를 주셔서 제 나름대로 위원장님의 절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발언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어제 그러한 현실들이 어제 하루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오후에 오늘 소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갑자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어제 그 특검법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안건이 바뀌었답니다. 안건 바뀌었다고 하면서 이만한 책자를 줍니다. 저보고 이것을 하면서 너 읽어 보라는 식입니다.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이 회의의 의도는 저희들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너희들, 우리 일방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뒤에서 병풍이나 서고 있으라는 정도밖에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본 국민들의 입장은 어떠시겠습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재네들은 들러리나 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모른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든 회의는 어느 단체든 어느 집합체든 회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 공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그러한 것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확보하게 해 줘야지 당일 날 아침에 와 가지고 이것을 내밀면서 이것 가지고 회의할 테니까 이 자료 가지고 너 얘기할 것 있으면 해 보라는 식으로 하면 회의하지 말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절차 진행을 하십니까? 이렇게 절차 진행하는 근본적인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형사소송법 우리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너네들 걸리적거리지 말라는, 아니면 너희들 시간을 주면 우리 얘기하는 데 방해가 될 거니까 우리가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답답함을 여기서 호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원래 계획대로라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비유하자면 이제 학기는 시작이 됐고 저희가 8차에 걸친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고, 저희가 축조심사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포트를 제출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시간인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절차 진행에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상당한 논의에 이르렀고 저기 차관님, 차장님 계시지만 기관의 의견도 저희가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박형수 간사님과 의논을 해서 일단 특검법을 먼저 상정하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내가 협상이 이루어지면 바로 저희가 특검법을 할 텐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국민의힘 원내와 당대표 간에 아직도 이견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민주당 원내수석과 얘기를 해서 이게 합의가 언제 가능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요. 이것이 지금 단정 지을 수 없고 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특검법 때문에 형소법 논의가 계속 미루어지면 결국은 또 국회의 시간이 공전되고 여러 가지 법안 처리가 다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소법 그간의 진행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특검법 협상이 되면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형소법을 계속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국회에도 물으니 소위에서는 법안 심사대로 심사를 하되 다만 일정 변경이 있으면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전에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의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쟁점별 논의사항을 보고받으시는 게 형사소송법 같이 심의하고 토론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잘 좀 들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원내지도부의 논의 과정을 지금 왜곡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또 하시게요?

○박형수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1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나도 오늘 아침에 원내수석한테 확인을 하고 왔어요. ‘특검법 협상 어떻게 되어 가느냐’, ‘아침에 만나서 어제보다 더 이견을 좁혔고 오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아마 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듣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 얘기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대기 위해서 이것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짓말하는지 위원장이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우리 당의 원내수석이 거짓말을 하는지 민주당의 원내수석이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들은 바로는 오전에 상당한 합의를 다 했고 몇 가지만 남았다, 그것은 오전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면 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오후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고 그 후에 형소법 논의를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것을 바꿔 가지고 지금 논의하겠다는 것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합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언제 협상이 될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한 언제 끝날지는 다 판단의 영역이라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우리는 이 회의에는 응할 수가 없어요. 오후에 특검법을 먼저 상정하면 그때 와서 회의를 하고, 나갑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보고는 받으셔야지요.

○박형수 위원 혼자서 지금까지 다 해 왔는데 혼자서 다 하지, 뭐. 마음대로 바꿔 가지고……

○소위원장 김승원 보고받으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견 받은 다음에 정회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형수 위원 의견 오늘 밤새도록 해야 돼요.

(일부 위원 퇴장)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보고는 해 주십시오.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국민의 힘 위원님들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보고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일곱 차례 소위 심사를 하셨고 오늘 4건이 추가로 회부되어 있어서 우선은 지난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오늘 추가로 회부된 4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곱 번의 소위를 통해서 법안들 독회하셨고요. 쟁점별 심사 마치셨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홍기원·정점식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고, 검사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송치 사유가 뭔지 구체화하셨고, 송치 사건 범죄와 관련해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까지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이행은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마치고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하도록 하셨고요. 이행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또는 징계 요구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상급 수사관서라든가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다고 심사하셨습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리가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경우에 신고를 받거나 검사가 인식하여서 이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한 후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건을 송치받게 되면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 배제 또는 징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 사법경찰관리의 법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그 사정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하도록 검사에게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시정조치 요구 절차는 피의자 및 피해자 인권 보호 절차기 때문에 관련 절차 안내를 꼼꼼히 하도록 법문에 명시하였고요.

검사의 채수사 요청과 관련해서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요청권으로 약화되어 있던 것을 검사의 요구권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검사는 송부일로부터 90일 내에 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90일 이후에도 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경은 3개월 내에 채수사를 마쳐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셨고요. 역시 채수사 요구를 사법경찰관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 배제나 징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로 신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긴급 사건에 대한 협력 의무 부분도 논의하셨는데 계속 심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홍기원 의원안에 있던 송치 사건 확대라든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도 계속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특사경의 검사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서는 현행과 다르게 개정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다.

그리고 개별적인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이라든가 압수물 환부·가환부, 구체적인 개별 수사권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 절차상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 이의 신청권을 고발자에게도 확대하는 것으로 일단은 의견을 모아 주셨고, 대신 이의신청을 확대하면서 그 기한은 제한하자 이런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지연 등에 대해서 구제 절차를 두기 위해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자는 이런 논의를 하였고요. 이러한 피해자의 권한 보호를 위해서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신설하자 이런 논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절차를 활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재정신청 사건을 확대하거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진술 녹음 의무를 수사기관에 부여 하자는 논의도 거의 조문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밖에 수사인권보호관 등 수사통제기구의 설치 방안도 논의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조직 직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시고 개별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견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사가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검사가 사경 직무 관련해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다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자. 대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수사 의뢰나 수사 통보를 받은 해당 수사기관은 해당 검사에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조항까지 두자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스스로는 본인의 수사업무 종사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때에는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의무조항을 넣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라든가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 심사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의사일정에 추가된 법률안들이 있는데요.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1)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10시47분)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제5항부터 15항까지 11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된 12항부터 15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법안 심사자료 2권을 보시면 86페이지부터 새로 추가된 4건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신 내용과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권 심사자료 86페이지입니다.

손술 의원안에 대해서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김한규 의원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것은 소개를 생략하고.

손술 의원안에서는 형사절차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현행 조문과 신설 조문들을 합쳐서 새로운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피해자의 권리 확대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밑의 피해자의 권리 확대와 관련된 내용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당사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자참가제도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뒤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인 통지의무 그리고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권 확대, 피해자 등의 이의제기권 신설, 피해자 보호의 원칙 및 신변보호 의무 신설, 피해자 등의 재정신청권 확대 이런 부분을 이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검사의 기소 전 사실확인 및 면담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공개자료를 확인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 면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대신 강제처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확인 및 면담 결과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유죄증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공판에서의 인격권 침해 신문을 금지하거나 그리고 사전에 공판준비절차에 부의할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김승원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승원 의원안은 2개째, 두 번째이기 때문에 로마자 II로 표시했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검사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라든가 공소유지를 위해서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 보고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검사에 대한 면담 및 의견진술 신청권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송치사건입니다. 송치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나 피해자 측 모두 검사에게 면담 신청이 가능하고요. 검사가 이를 필요성을 고려해서 허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진술인들은

진술하는 것 외에 관련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류의 압수가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경에게 압수 요구하도록 절차가 있고요. 이 면담이 끝나면 결과서를 작성하는데 증거능력은 없다는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김남희 의원안 90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의원님 안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를 삭제하고 모든 수사권의 주체를 사경으로 일원화하되 전건 송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경은 모든 수사를 종료한 뒤에 검사에게 모든 사건을 송치해야 되고 그런 관계로 지금 피의자, 고소인 등 이의신청권 그리고 불송치 결정에 따른 재수사 요청 조문을 삭제하는 조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중요·긴급사건에 대해서는 협력의무 조항을 홍기원 의원안과 같이 그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하단에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행의무기간을 3개월 내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염려’라는 이 조항을 독립적인 구속사유로 추가하고 있고요.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 여부 이런 것들을 통지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김예지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권의 대상자를 고발인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법무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건 처리의 지연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하시는 부분인데 지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를 처음 한 사법경찰관과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받은 검사가 일종의 책임수사제처럼 자기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그리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큰 이의는 없으실 거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사법경찰관리가 기록을 검찰로 송부했을 때, 핑퐁이라고 하지요. 자꾸 검찰에서는 이것을 또 사경으로 보내고, 이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같은 것에 대해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간략히 책임수사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와 같이 수사주체 그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에도 사건을 검토하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 등을 했던 검사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성 강화 방향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성이 되

어 있고 그 둘의 주체가 역할을 분담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여건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찰관 1명이 수사를 주도하고 사법경찰관과 리가 함께 수사하는 그런 절차들이 많이 이행되지 못하는 것도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경찰과 같이 1차 수사기관에서 많이 담당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형소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과 리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도 먼저 전제적으로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추가 질의를 드리면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기록을 예컨대 사법경찰관한테 보낼 때 그러면 그것이 그 검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지금 사건 종결 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배경은 수사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되면서……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박은정 위원님께서서는 사건번호를 유지하면서 그 검사가 계속 사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혹은 더 나아가서 사건 기록 원본을 검사가 갖고 있으면서 보완수사할 부분, 예컨대 약간 경미하거나 일부분이겠지요. 그런 데 대해서는 사경에게 보완수사를 명하고 그 기록을 받는 것, 추완이라고 하지요. 추완이라고 하는 제도를 기본적으로 하면 사건이 그래도 지연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민생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대책으로 하나 요구되는 것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 사건 종결이 되게 되고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사건의 추적과 최초 사건 수사부터 종결 때까지 얼마나 수사기간이 걸렸는지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결국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와 같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사가 그와 같이 보완수사 요구를 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 과정에서 검사가 실질적으로 그 이행 과정을 점검하거나 이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도 내지는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검사가 사건번호만 관리한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화롭게 제도가 설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제가 좀 설명을……

○소위원장 김승원 예.

○박은정 위원 일단은 차관님 말씀을 조금 더 반영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처음에 김용민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한 법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그 사건을 주임검사가 그대로 관리, 그러니까 보완수사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조 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지요—거기에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요구사

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이 조문을 저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화하는 규정이고요.

다만 예전에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보완수사 요구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사건번호를 그대로 두는 방안으로 갈지 아니면 사건번호를 없애고 아예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갈지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는 아마 사건번호가 그냥 없어지고 사건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경찰에 가 가지고 언제 올라올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행 여부 점검도 안 되고 그리고 사건이 보완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검찰에 송치가 되면 대부분은 원처분 검사, 원주임검사한테 가긴 가겠지만 또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건번호를 주임검사에게 그대로 두는 방식이 조금 더…… 이것은 신속한 보완수사를 달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완이라는 것은 수사준칙에 있는데 검찰의 주임검사가 사건기록을 그대로 두고 사건 원기록을 그대로 두면서 아주 경미한 보완수사 요구할 것이 있으면 혹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추완이라는 제도는 주임검사가 사건 기록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되 추완의 형식으로, 그래서 추완해야 될 내용들을 KICS에 넣어 가지고 경찰에 보내면 경찰이 그것을 추완해 가지고 추송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도 추완이라는 제도는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수사준칙에 있는 추완이라는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조문화시켜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신속한 보완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거고.

지금 차관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완수사 이행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점검을 검사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논점이긴 해서 그것은 보완수사를 충실하게, 대상과 방식과 내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도록 이번 법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 상세하게, 충실하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경찰에서 그에 따라서 보완수사를 하면 되는 거라서 기간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보완수사 내용이 요구 내용에 충실하다면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점은 지금 실질적으로 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부과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선 현장에서, 저도 일선에서 보완수사 간단한 요구가 내려간 것이 6개월, 1년 동안 송치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본 바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유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사법경찰관리님들께서 다른 사건 수사에 바빴다 내지는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지연되었다, 사건 당사자에게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지연되게 된 것이다 등등으로 징계 사유거나 책임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렇게 비위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각종 업무 과중을 이유로 해 가지고 사건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사 지연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리의 상급자, 경찰 내에서 확실한 사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건의 평풍이

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의 방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보완수사 요구를 전부 내려보낸 사건들을 검사실에서 전부 다 관리하라고 하는 방안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책임수사제 관련해서 경찰관들께서 수사를 하시고 수사 경과 내지는 해당 파트에서 얼마나 근무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일선에서 보면 6개월 내지는 1년, 1년 반 만에 부서를 옮기시거나 파트를 옮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동이 잦은 부분도 책임수사제를 활용하기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나 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약간 지적드리고 싶은 점은 예컨대 성남FC 건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검사가 부산 지검으로 발령을 받았음에도, 그런데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있으면 대리 발령을 받아서 그 재판에도 들어가고 또 성남지원에도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정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왜 일반 국민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열정을 안 보여 주시는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또 국힘 위원들이 없는 게 참 기괴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지적을 드리고, 이런 중요한 형사소송법 논의를 함에 있어서 들어와서 의견을 밝혀도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도 없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보완수사 요구권을 경찰이 잘 이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담보할 거냐의 얘기가 중요한 과제가 된 거 같아요. 검사에 직접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논의가 결론이 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 부분은 우리가 체도를 잘 설계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머리 맞대서 체도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만들어진 체도가 실제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이제 공소청이겠지요. 공소청도 그리고 경찰도 다른 수사기관도 공직기강이 바로 서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다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직기강의 문제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검사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을 차관님도 좀 깊이 새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지금 경찰이 없어서 제가 경찰에게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이 형사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잘 돼 있는 독일의 독일 경찰청장과 독일 검찰청장, 각 주의 경찰청장·검찰청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저를 되게 한심하듯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상상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답을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공직기강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우스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서 어떻게 잘 이행하게 만들 거냐라는 것들을 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경찰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차관님도 보완수사 요구권 이행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상급자들이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찰도 수사과장, 일선 각 경찰서의 수사과장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보완수사 이행률을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사과장이 직접 점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예요. 이런 제도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점에 대해서 공직기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수사 사건에 있어서 증거를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보완수사 필요성을 결정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즉 그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 사건 처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은 검사인데요.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행을 요구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에 대한 평가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분리되는 점이 현실에서는 저는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2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장기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에 대해서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1년 이상 사건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최근 보도에 나왔듯이 사건 기록이 누락됐다고 4년 만에 송치하는 사건들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태입니다. 즉 이 차이 때문에, 또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 안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이행률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 평가를 하시는 분이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얼마나 충실히 됐는지, 보완수사 요구 내용에 대해서 정말 충실한 보완수사가 이행이 된 것인지 이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 것이고요. 단순히 사건 대비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률로만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통계에 대한 평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자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래서 이와 같은 분리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검사가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 대부분은 잘해 오시겠지만 정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적법 절차를 위반한다든지 증거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평가가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인사고과나 평가에 반영되는 시스템들도 마련이 되어야, 즉 징계나 비위에 이르지 않은 그런 수사 미진에 대해서 대비·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용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경찰의 인사평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송치된 사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경찰, 그러니까 경찰에 그와 같은 통보를 줘야 되고요.

○**김용민 위원** 그러면 반대로……

○**법무부차관 이진수** 우수한 경찰관도 그와 같은 의견을 회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반대로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를 받으면 경찰도 검사에 대한 평가에서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는 것은 동의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이 제도가 변경이 되면 무죄율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그와 같이 무죄 이유가 검사의 판단으로……

○**김용민 위원** 차관님, 잠깐만요. 지금 차관님의 그 얘기는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 벌써부터 무죄율이 급증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차관님은 지금 조직기강을 어떻게 바로 세워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잘 정착될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망해라 망해라, 우리가 어떻게든 거부하고 어떻게든 불이행하고 어떻게든 해체할 테니 국회는 한번 법을 만들어 봐라, 뭘 만들어도 우리는 다 빠져 나가서 검찰개혁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처럼 느껴지는 발언들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주어진 조건하에서 어떻게 최대치를 끌어낼지를 고민하고 오셔야 되는 분이에요, 차관님은. 계속 제가 이 부분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차관님 검사 출신이라 그러신지 검찰 편만 자꾸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현실에서 잘 작동할지를 고민하셔야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방금 수사 지연과 핑퐁에 관한 우려점을 말씀을 드려서……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잠깐만요.

이 정도 하시고요.

저도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심사자료 89페이지 혹시 보실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8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89페이지 보면 ‘의견진술인이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에서 사건에 관련한 물건의 제출 의사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물건에 대한 압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물 압수 처리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나중에 아마 법정에 제출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라고 봐서 검사가 사경에게 요청하는 것일 텐데 문제점이 좀 보이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이 자체로는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보완수사권 또는 직접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수사라는 것이 그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로 이해를 할 때 검사가 사법경찰관한테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해서 그 물건의 압수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왜냐하면 5항에 보시면 면담과 같은 그런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법정에 현출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물건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는 검사로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경에게 압수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이해관계인 요구를 들어드리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임의제출에 관한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고요.

또 하나, 발언 기회를 주신 김에 말씀드리자면 상단 부분에 여러 가지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진술인 면담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의견진술인인 피해자나 피의자의 진술도 검사가 지득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진술 자체를 나중에 법정에 현출시켰을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만 하게 되면 바로 증거로 쓰게 된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추측되어 온 여러 가지 증거법칙이라든가 증거법리에 거꾸로 가는 방향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 진술은 아마 진술거부권 고지도 안 돼 있거나 자연스럽게 흘러 나온 것이어서 법정에는 증거로 아예 못 쓰도록 하는 것은 저희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은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은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토론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이진수 차관님, 심사자료 2권 89페이지, 같은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견진술인 면담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걸 아마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이해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의견진술인 면담결과서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방침에 부합하는 조항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다수 위원님들은 이것을 당연시하고 있고 다만 이때 면담을 했던 검사나 그 면담에 참여했던 보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들의 어떤 조사자 증언 유사한 제도, 면담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법정에서 진술로서, 증언으로서 평가받게 하는 방안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체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결국 피의자나 피해자·참고인이 검찰청 등등에서 진술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법정에서 옮기는 것이 결국, 전문법칙에 의해서 지금 증거법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소 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수사 과정으로 개념상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수사 절차로서 통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청에 와서 진술한 피의자나 피해자·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검사나 수사관이 법정에서 증언대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것 또한 전문증거로서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제도 설계가 가능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자 증언 제도가 현재 형소법상 특신상태를 요구하고 있고 판례는 특신상태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제도를 설계한다 그러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완전히 그냥 제3자로서 전문의 진술을 검사나 수사관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지금 조사자 증언 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제도인지 등에 대해서도 정말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면담했던 내용을 법정 증언을 통해서 증거로 현출시킬 수가 있고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동의를 쉽사리 못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일반인인 제3자가 아니고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나 공소청 직원이 피의자나 피해자를 상대로 지득한 진술을 일반인 같은 제3자하고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균택 위원 이것을 조사자 증언 또는 면담자 증언을 통해서 조차도 어떤 증거 활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수사의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 또는 고의성을 인정하는 진술 이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기소를 했는데 그걸 현출을 못 시킨다고 하면은 법정에서 면담 당시 파악했던 진실과는 다른 결론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어서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의문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심층 연구를 하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점이 결국 기록만 보고 검사가 판단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관계 확인권이나 면담권이 들어올 경우에 그때 확인한 내용을 결국 기소 여부 등으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검사가 결정을 할 때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냐 등등이 아직은 너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박균택 위원 행정처 차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조사자 증언을 논할 때에는 수사관, 수사권이 있었던 검사나 경찰이나 또 참여 수사관의 증언을 전제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수사권이 없는 면담자의 지위에서 들었던 내용을 법정에서 조사자 증언과, 조사자 증언이 될 수도 있고 면담자 증언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용어를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면담자 증언을 과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특신상태도 있고 반대신문권도 보장은 돼야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게 증거 활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십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조사자 증언 절차를 통한 증거 활용도 불가능할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직접적으로 피고인 신문이라든가 증인으로 불러서 묻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이 논의가 되는 이유는 수사 과정 내지는 검사 면담 과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또는 고의에 관한 내용들을 분명히 시인을 했던 경우인데 법정 가서 말이 바뀐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정에서는 부인하지만 기소 단계에서 본인이 어떤 범죄행위나 고의를 시인했었던 것 그것이 아예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창구를 막아 버리는 것 이게 타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허용은 되되 특신상태나 반대신문권 보장을 통해서 판사가 엄격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창구를 조금이라도 열어 놓는 것과 아예 어떤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창구를 막아 버리는 것과는 이 건 상당한 큰 차이가, 중요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겠지요, 진실의 공백 문제라는 것이 발생하는 영역이 될 테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형소법 개정 논의를 떠나서 현재도 왕왕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 결과를 얼마나 믿느냐라는 것은 얼마나 간접증거라든가 다른 증언·증거로 뒷받침하느냐라는 공소 검사의 여러 가지 입증 방법에 따라서 좌우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밖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도 설계에 관한 부분은 법원이 함부로 나서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건……

○**박균택 위원** 아니아니, 저는 이것을 법원에게 입법론으로서의 어떤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 이 규정에 따른 해석론의 문제를 질문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자 증언이라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매우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엄격하게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냐, 엄격한 증거 채택조차 할 수 없는, 아예 법상에 올릴 수 없는, 배척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료인 것이냐 그게 저는 궁금한 거지요, 해석론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그 엄격한 증거 법리를 벗어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 처음……

○**박균택 위원** 그러면 판단의 대상도 아닌 겁니까?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어떤 신빙성, 특신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상태에서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증언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자료인 것이냐 이걸 지금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글썄요, 제가 위원님의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해서 제가……

○**박균택 위원** 쉽게 표현하면 증거능력, 증거능력과 신빙성의 문제로 따질 때 증거능력조차 없는 것이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조사자가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얘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박균택 위원** 예, 그렇지요. 아예 등장할 수가 없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법정에서.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그건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들은 내용 자체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었다는, 이 사람이 그러한 시인을 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들었다, 이런 말을 한 사실을 내가 들은 적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냐.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조사자 증언은 되지만 면담자 증언은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조사자하고 면담자의 차이가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박균택 위원** 아니아니, 큰 차이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검사에게 우리가 조사권을, 수사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수사가 되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라는 것이 유죄를 받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일련의 절차인데 어떤 식으로든, 들었던 것이든 면담자든 조사자든 그것을 법정에 현출해서 유죄 증거로 쓰겠다는 것 자체는 수사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는 엄격한 증명의 법칙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면담은 면담일 뿐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검사 앞에서 시인했던 진술 이것은 어떤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결론이신 거네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그렇습니다. 그걸 활용하게 된다면 그건 수사인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주로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다 이석해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심사 자료도 가지고 가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는 정점식 의원의 법안이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은 충분히 토론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정회를 하고 다시 특검법이라든가 등등 여야 협상에 따라서 심사 순서라든가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토론을 이제 마치는데 더 하실 분.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아까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신 사실 확인이나 면담 관련해서 어떤 취지로 입법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우선은 지금 공소청 검사의 사실 확인, 면담 제도에 대해서 법 조문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입법 취지가 이것이 수사로 가게 된다면 반대하고요. 다만 이것은 검사가 심증을 형성하는, 기소를 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하는 정도로 입법이 된다,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 중의 한 분이 ‘이제서야 심사 자료를 받았다, 이제야’ 이렇게 아까 얘기하시고는 가 버리셨는데 사실은 이 법안이 발의된 게 한참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충분히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심사에 참여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3주째 출석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의견도 내지 않고 또 오늘조차도 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특검법이 먼저 심사돼야 된다 그런 이유로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의 직무 해태에 대해서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였다가 속개 시점은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김승원 박형수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순순히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네요, 오늘은.

오전에 특검법을 먼저 논의를 하고 형사소송법 논의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사일정이 결정된 것은 어제 이미 결정된 상황이에요. 그것을 갑자기 아침에 와서 바꾸겠다라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어떤 저의가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특검법을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특검법 논의가 지도부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 순서를 다시 원래 안전대로 특검법 논의를 좀 하다가, 하다 보면 만약에 원내지도부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그것을 여기 녹여 내서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늦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을 잠시 보류를 하고 형사소송법 논의를 이어 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김한규입니다.

만약에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의가 그렇게 현재 진행 중이고 조만간 될 것 같으면 박형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시 정도에 아마 협의를 끝내고, 협의가 결렬이 된 상태고 지금 분위기로는 오늘 협의를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오전 일찍 아마 여야 간사가 양당의 의견들을 모아서 추가적인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형수 위원 오후에도 한다던데?

○김한규 위원 예, 그런데 저도 같이 있다 왔으니까. 그래서 오후 중으로 협의가 돼서 바로 그걸로 오늘 저희한테 전달해서 오늘 처리를 요청하거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쟁점이 많지는 않은데 좀 격차가 커서, 이견이 커서 몇 분 기다린다고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간사님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일 오전에 협의를 계속하자라는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관위 특검법 말고 형사소송법 심사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까 참 제가 빠뜨린 것 있는데 보충의사진행발언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예, 소위니까 허가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어제 특검법 논의를 하면서 일부 조항들에 대해 가지고 지도부에 논의할 사항이 아닌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하다가 보류가 되거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위원이 정리를 하면서 가면,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도부에서 협상을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 가면 오늘 저녁이든 내일 아침이든 만약에 전체적인 협상이 타결된다면 빨리 이것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우선 답을 드리기 전에 김한규 위원님께서서는 저희 원내정책수석님이시고 가장 정보가 빠르고 확실한 분이어서 잠깐 박형수 간사님과 여기 앞으로 나와 주시면, 잠깐 상의드리고……

○김한규 위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두 분과 말씀을 나눴고요. 같이 협의해서 오늘 의안 1호부터 4호까지의 특검법을 일단 상정을 하고 논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논의를 계속 심사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2.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15시33분)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어제 논의하였던 의사일정 1항부터 4항 선관위 관련 특검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어제 회의의 심사 경과와 추가 논의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소위 논의 경과를 정리한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소위 논의 필요사항이라고 정리돼 있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된, 얇은 걸로 해 가지고 소위 논의 필요사항이라고 제목이 돼 있습니다.

조문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제 결정된 내용은 조문별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얇은 조문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전문위원 최기도 1쪽입니다.

1쪽, 제명은 합의된 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적도 어제 제정안에 다 동의를 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어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일단 보류가 된 내용인데 합의 내용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 수사대상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고 하셔서 수사대상은 넘어가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러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6쪽입니다.

수사대상 관련 부분이기는 한데 본격적 수사대상이 아니고, 6쪽의 2항입니다. 2항은 이 해충돌금지 관련 규정인데 이것도 어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항입니다.

관련 사건 내용인데요.

3항 1호에서 범인도피죄 같은 경우는 유상범 의원안 같은 경우는 범인도피죄가 있는데 한병도 의원안은 범인도피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합특검법 개정으로 범인도피죄가 추가되어서 유상범 의원안대로 범인도피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우리는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형수 위원님 동의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제가 봐도 범인은닉죄가 있어서 범인도피죄를 추가하더라도 크게 예상 범위 바깥의 그런 불의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범인도피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최기도 다음, 7쪽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관련 사안입니다.

1항은 국회의장이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2항은 대통령은 역시 2일 이내에 국민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의뢰하는 내용인데 1항과 2항은 2일로 하기로 어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항, 4항, 5항은 어제 한 조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추천위원회에서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 의뢰하는 절차를 세분화해서 3·4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6항은 입법례에 따라서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3일 내에 하도록 일단 입법례에 해 놓았고요. 그리고 7항은 입법례에 따라서 6항과 7항이 같이 있던 걸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항과 5항부터는 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의뢰를 하는 날을 2일로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5일 이내에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일단 예시를 해 놓았고요. 그래서 2일, 5일, 3일로 되어 있는 3·4·5항, 6항의 3일 부분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원래 이게 2일, 2일 합쳐서, 그 뒤로 합쳐서 7일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전문위원 최기도 원래는 5일로 어제 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합쳐서 5일?

○전문위원 최기도 그런데 그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박형수 위원 11일로 늘었네요, 그러면. 합쳐서 5일이 11일로 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10일입니다, 2일, 5일, 3일로 해 가지고요. 이거는 예시로 그냥 넣어 놓은 거라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항과 2항은 2일로 하기로 결정하신 내용이고 3·4·5·6항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적당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특검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일 이내에 2명이 추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추천위원회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

○김용민 위원 이게 추천위원회가 3명, 3명을 추천하니까 결국에는 1명씩 추천하면 3일 이내에 충분히 추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군요. 6명이 1명씩 하면 6명.

○김용민 위원 예, 6명이 2명을 추천하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좋은 말씀입니다.

○김용민 위원 이 정도 시계는 쥐야 되지 않을까요?

○박형수 위원 6항의 3일은…… 다른 특검법에 다 3일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일반적으로 3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2일로 줄이면 안 될까?

○김용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검토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기는 해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합시다, 이대로.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예시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8쪽입니다.

먼저 제4조(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입니다.

어제 광규택 위원께서 위원회 구성기한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추천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2일 이내에 구성되도록 일단 2일을 추가해서 문안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3항에서는 상설특검법의 국민추천위원회의 입법례에 따라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위원이 지금 짝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이 호선이 안 될 경우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논의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항에서 원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어제 나름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규칙은 운영 위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운영위와 의사국에 확인해 본 결과 이 법이 시행된 후에 국회규칙을 만드는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돼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국회규칙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국회규칙에 담을 내용을 최소화해서 법률에 담을 것인지를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4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게 법안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국회규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박형수 위원 그러면 또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 최기도 그래서 어제 광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형수 위원 법안에 담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전문위원 최기도 최소한의 내용 범위를 담는 방안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면 기존의 상설특검이나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준용하면 안 되나요?

○박형수 위원 내용이 다를 텐데?

○김용민 위원 운영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준용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준용할 수 있으면 준용하는 걸로 정리해 버리면……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냥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웬만하면 준용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별도 개별법이기에 때문에, 개별 특검법이기에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김용민 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럴 것 같고 법에 넣는 거는 조금 내용상 어색한 것 같고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은 준용하고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법에 넣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용민 위원 예를 들면 추천위원회의 내부규칙을 정해서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정하게 하는 게 어제 그 규칙에 있었잖아요, 운영규칙에.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법에 끌어올려 주고 해서 준용하고 안 되는 것들은 내부 운영규칙을 스스로 정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박형수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전문위원이 구성을 해 보세요.

○전문위원 최기도 저희가 지금 최소한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아 가지고 그 초안을 만들어 둔 게 있는데 한번 같이 검토……

○김태규 위원 규칙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법에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겠는데요, 보니까.

○김용민 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특검법이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법이 되어 버릴까 봐……

○김태규 위원 향으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전문위원 최기도 일단 3조는 생략하고 4조에서 3항이 약간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5항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8항부터 12항까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의 직무대행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건 합의로 하지만 그 밖의 사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8항은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9항은 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는 내용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내용 그리고 10항은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 그리고 11항, 비밀누설 금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의견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아니, 이 정도로 다 담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김용민 위원 그냥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은정 위원 지금 위원장 호선이 문제인 거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 부분도……

○박은정 위원 그게 아마 동수인 경우에 그러면 의장이 임명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든지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박형수 위원 동수면 특검도 저거 하면 연장자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임명 안 하면, 자동 임명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수면 연장자로 하는 걸로……

○김용민 위원 얼마나 연장자를 또 추천하시려고……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재적위원이 6명이라 과반수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4 대 2니까.

그래도 간사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쥐나요, 아니면 2명이니까 1명씩, 1명씩?

참,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또 복잡한 부분이 생기네요.

의견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아니, 저는 이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 정신에는 어느 쪽도 한쪽에서 좌지우지 못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합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살린다면 자동으로 동수일 때는 연장자로 한다든지, 연소자로 한다고 젊은 사람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연소자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장으로 가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국회의장이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당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를 운영해 온 관례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차라리 여기서 연장자로 하든 연소자로 하든 그렇게 자동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 추천위……

○김용민 위원 위원장 호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아니지. 여야 동수가 되면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면 호선으로 하는데 그것을 거기서 결정이 안 되면, 3 대 3으로 돼서 결정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국회의장이 지명하도록 할 것이냐, 자동으로 연장자가 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지금.

○김한규 위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인데 합의하지 않을까요?

○김태규 위원 그러면 참 좋겠는데……

○박형수 위원 그냥 놔두자고? 차라리 그러면 그냥 놔둬 버리든지.

○박은정 위원 이게 3·3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을 하게 되면 3 대 3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국회의장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태규 위원 3 대 3이 돼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 특검법은 야당의 요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원래 야당 추천 특검을 원했던 거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지금 서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자고 해서 시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구성에 대해서만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 야당 쪽에 주도권을 주는 게 맞지 이걸 국회의장이 결정할 것 같으면 사실은 결국 전체적인 주도권을……

사실은 회의 진행하는 의장, 위원장이 얼마나 큰 힘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명목상의 권한이라도 야당 쪽에 주는 게 오히려 모양새는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박형수 위원 야당 위원 추천 위원 중에서 연장자.

○김태규 위원 아니, 야당 합의로, 야당 쪽에 주도권 주시면 되지요. 그거까지 그렇게……

○김용민 위원 이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뒤도 위원 여섯 분이 결국에는 합의를 도출하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결국에 합의 도출해 가지고 위원장을 사실상 연장자로 추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리가 나를 될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 지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위원장 호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민 위원 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저는 그거는 그 여섯 분이 다 학식과 덕망이 있어서 잘 처리할 거로 예상이 되고 제가 걱정하는 건 재적위원……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학식과 덕망이 없어서 맨날 싸우나?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부터.

○김한규 위원 저희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추천하면 되지요.

○김태규 위원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잘 벌어질 거라고 상상은 안 되지만 법이라는 게 항상 최악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상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건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걱정하는 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김태규 위원 그것도 사실은 문제야, 문제.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장 호선이야 여섯 분이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5항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번 얘기를 한 건데……

○김용민 위원 출석위원 과반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결은?

○박형수 위원 아니, 호선을 학식과 덕망이 있기 때문에 호선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우리처럼 그렇게 싸우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김용민 위원 의결은 보통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가지 않나요? 여기 재적 과반수 찬성 의결은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최기도 그거는 상설특검법의 입법례를 따라서 그렇게 일단 초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용민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한 교섭단체가 추천한 분들이 다 불출석해 버리면 무조건 의결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소위원장 김승원 혹시 국회 운영규칙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아까 국회 운영규칙에는 어떻게……

○전문위원 최기도 상설특검법 그 규칙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까 국회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최기도 그게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말씀하신 거였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상설특검법은 지금 5명이잖아요.

○전문위원 최기도 7명입니다.

○김용민 위원 아, 7명인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김용민 위원 그리고 당 추천의 개념이라기보다 또 차관……

○전문위원 최기도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예전에 공수처법 처음 통과돼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때 국민의힘 측의 추천위원들이 다 보이콧해 가지고 아예 회의 자체가 안 열렸지요.

○박은정 위원 그러지 말고 비교섭이 위원 1명 더 추천하도록 해 가지고 7명을 만들어 주세요. 비교섭 중에서 위원 수 제일 많은 당에서……

○김용민 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박은정 위원 매우 공정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박은정 위원 왜 우리는 뺀 거예요?

○김용민 위원 국민의힘이 동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태규 위원 그리할 것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 결정하라 그러지요, 그런 안이면.

○박은정 위원 저희 선명 야당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쪽에 앉아 있는데?

○김태규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안 느껴지지요?

○박형수 위원 야당이 왜 우리만 맨날…… 우리도 야당이니까 저기로 보고 공격을 해야지.

○박은정 위원 선명 야당입니다.

○김태규 위원 민주당보다 더 심하게 느낄 때가 저희는 더 많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뭔가 좀 문제점은 있고요. 여기서……

○김태규 위원 오히려 전체 구성과 관련된 이 부분은 실제 3 대 3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진척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들께서 논의할 때도 조금은 얘기를 한 번쯤 더 할 필요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소위원장 김승원 김한규 위원님 어떠세요?

○김한규 위원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기관에서 요청하니까 그 기관 중에 1명씩 추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협에서 세 분 추천한 중의 한 분, 법전원에서 한 분 이렇게 되면 그 정도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고 거기가 특별히 정치적 색채가 있는 분들을 추천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걸러내고 최소 한 분 정도는……

○김태규 위원 거기는 후보를 추천하는 것 아닌가요, 변협하고 법전원은?

○김한규 위원 예, 후보를……

○김태규 위원 우리는 지금 위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할 때 누구를 2명으로 할까 이게 합의가 안 될까 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암묵적으로 법전원은 세 분 중의 1명을 추천하고 변협 세 분 중의 1명을 추천하는 걸로 이 여섯 분이 합의를 해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처음부터 여야가 그냥 합의하기로 하는 것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외부 인사로 추천하자고 하셔서 하는 거거든요.

○김태규 위원 양당에서 추천해서 들어가서 위원이 되니까 서로 양당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예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제 경험은.

○김한규 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지요.

○박형수 위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때는 우리 당에서, 양당에서 직접 추천하는 분들이고 이것은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김한규 위원 하여튼 7일 내 기간 내에 못 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다시 바꿀 수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소위원장 김승원 이 부분은 약간 원내와도 상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서 일단은 잠시 보류를 하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9쪽입니다.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입니다.

이 7조는 9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과 2항은 그대로 하기로 결정하셨고요. 3항은 특별검사가 자료제출 및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입니다.

일단 3항의 문안은 기존 특검법 입법례에 따라서 작성이 된 것이고요. 수사 협조 대상 기관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은혜 의원안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금융위, 금감원이 포함돼 있고요. 백혜련·한병도 의원안에서는 공수처가 추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의원안에서는 중앙선관위, 각급 선관위, 공수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정사업본부, 조달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 기관 관련 입법례를 보면 김건희 특검에서는 ‘가’라고 표시돼 있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더해서 대통령경호처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내란특검법과 종합특검법에서는 지금 법안에 있는 ‘가’하고 동일한 내용이고 순직해병특검에서는 ‘가’에 더해서 국방부가 추가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대상 목록과 관련해서는 유상범 의원안이 선거관리 자료, 투표록, 개표록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나중에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쪽입니다.

10쪽은 3항의 자료, 수사 협조 요청 일반적인 조항에 더해서 유상범 의원안에서 추가로 규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4항은 특별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 요청한 절차나 법원 영장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 열람, 사본 제작 등 자료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6항은 특별검사가 역시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인쇄업체, 운송업체 등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두 안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4항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약간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역시 6항에서도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불명확하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에 있는 4항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파견기관 및 파견공무원 수인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은혜 의원안에서는 대상 기관이 금융위, 금감원, 백혜련·한병도 안은 공수처 그리고 유상범 의원안은 공수처, 행정안전부, 중앙선관위, 각급 선관위들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견검사의 수, 파견공무원의 수는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박형수 위원 잠깐만.

김한규 위원님, 이 7조 관련해 가지고도……

○김한규 위원 10쪽이요?

○박형수 위원 7조. 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이것도 원내 지도부에서 같이 논의했습니까, 이것은 빠졌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7조.

○전문위원 최기도 9쪽입니다. 9쪽의 7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닙니다. 이것까지 논의하지 않았습시다. 제가 직접 들어가진 않았는데 좀 전에 아까 대략 정리된 것에는 없었습니다. 보니까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대상하고 수사 규모, 범명 이 정도만 논의하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위임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주로 전례에 따라서 하시고 새롭게 하는 것은 논의만 복잡해지고 결론이 안 날 수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의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11쪽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6항 부분에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따를 의무 조항입니다. 관계기관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유상범 의원안에서는 관계기관의 장에 더해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까지 포함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 강도와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 백혜련 의원, 한병도 의원안은 ‘반드시’라고 되어 있지만 유상범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약간의 예외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또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7항은 결정 확정된 내용이라서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7조 직무범위와 권한 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어제 논의되면서 ‘반드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반드시’와 관련해서 신상정보나 아니면 협조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상범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자체로 이미 이것은 상당히 완화되고 타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안이라면 다른 수사 협조도 다 포함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항 표현을 통해서 정당하지 않다는 게 밝혀지면 기관은 거부하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사유로 삼아서 영장 신청을 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정당하다’라는 그 표현, ‘정당한 이유’라는 그 표현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 양보된 수사 협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료제출 대상이 기존 특검법은 다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이었는데, 그래서 대상기관이 대검, 공수처, 경찰청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건에 한해서 자료제출 대상을 ‘선거관리 자료 등’ 이렇게 넓히고 그래서 대상기관이 3배 정도로 확대가 된 건데 여기에서는 수사기록이라든가 증거 등 자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병도 의원안으로 기존처럼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규 위원 그러면 한병도 의원안처럼 이렇게 하고 이러면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만드시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그러한 절차로 진행되는 겁니까?

○**김용민 위원** 기존 예에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김태규 위원** 지금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3개는 반드시……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오히려 폭이 좀 넓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하게 하면 그 대상기관이 좁아드는, 그렇게 서로 균형이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선택의 문제가 남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병도 의원안으로 갈 경우에는 그 기관은 무조건 내놔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부분은 김태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해 보이는데 먼저 의견 주시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이 부분은 다른 특검법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정당한 사유로 이렇게 여지를 두는 그런 특검법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님?

○**전문위원 최기도**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입법례에 따르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박은정 위원** 대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그런데 유상범 의원안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른 법은, 김은혜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해서만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의 장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유상범 의원안은 관계기관의 장 이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민간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약간 예외를 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게 아니라 이 특검법 말고, 지금 발의된 특검법 말고 기존에 통과시킨 특검법, 우리가 했던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걸로 규정을 했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최기도**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수사기록하고 증거 등 자료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해도 수사관서의 장에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상범 의원안에 따르면 지금 방대한 공사, 기관에 대한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붙인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나중에 수사 다 끝나고 이것이 판단되는 거여 가지고 수사받을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병도 의원안으로 하되, 다만 이것을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할지 아니면 다른 여지를 둘지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범위도 줄이고 ‘반드시’도 없애자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쪽에 좋은 것만 다 채택하고 상대방에 유리한 건 다 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법 이 조항 취지가 사실은 기존에 다른 수사기관에 관련된 사건들 수사한 것들 넘겨라라는 취지의, 자료들 넘기라는 취지기 때문에 당연

히 반드시 줘야지요. 그래서 기존 예로 그냥 가서 반드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반드시 따르는 걸로 하고……

○**박은정 위원** 그래도 큰 무리가 없어요.

○**박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그전에 했던 특검법안과?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할 만한 자료를 확장을 한 것이 아니라 예시를 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유상범 의원 안에 쪽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제출받으려면 그전에 했던 것처럼 공수처나 검찰청이나 경찰청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제출받는 자료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자료제출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협조가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가리고, 인적사항이 있는 부분을 가리고 우리가 제출해도 되겠느냐?’라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서 수사에 활용하고, 인적사항이 들어 있는 부분까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하고, 이것은 충분히 임의수사·강제수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김용민 위원** 이 조문의 성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수사를 위한 조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자료들을 확보해서 수사의 기초자료들을 확보하는 개념에 가까운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얼마 전에 특검법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감사원한테 우리가 자료 제공 요구를 할 거냐,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기존에 윤석열 내란 때도 대통령실이란 경호처랑 다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는데 그거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하던 대로 가고.

선관위에 필요한 것들은 임의수사의 방식이 됐든 강제수사의 방식이 됐든 그건 특검이 수사를 하는 방식에서 거기서 정하면 되는 문제이지 여기서 이렇게 자료 협조로 일률적으로 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규 위원** 수사하고 무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 제목 자체가 ‘수사 협조’이지 않습니까?

○**김용민 위원** 수사대상자한테 ‘내놓아라’ 이렇게 하는 것을 법에다가 집어넣는 게 강제 수사거든요, 사실상.

○**김태규 위원** 그리고 여기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순직해병특검에 같지만 국방부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방부가 사실은 해당 특검의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한병도·백혜련 안으로 간다 하더라도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이쪽은 포함되는 게 균형상 안 맞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지금 대통령실하고 대통령경호처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김태규 위원** 예, 그렇게까지 얘기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도 다 빼 버리고 이래 버리면……

○**박형수 위원** 그것은 빼면 안 되지. 대상기관이 자료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지. 안 내면 압수수색하는 거고.

○**박은정 위원** 왜냐하면 대검이나 공수처, 경찰청 여기가 들어간 거는 여기가 수사대상이었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김태규 위원** 그거는 수사기관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도 수사대상이었다기보다는 채 해병 관련해서 조사를 했던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수사기록이라든가 증거가 있어 그 수사와 관련된 증거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수사대상인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했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지요.

○**박형수 위원** 수사가 꼭 강제수사만 해야 돼요? 압수수색만 해야 돼요? 임의제출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태규 위원** 그리고 지금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법원도 못 믿습니다, 선관위 위원장들이 전부 다 판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이 이번에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저거는 선관위하고 법원이 한패라서 저렇게 해 준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적어도 선관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행안부도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포함시키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임의제출 요구해서 낸 것으로 만족을 하고 압수수색 안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임의제출 요구했을 때 그걸 낸다고 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다 자료를 냈다고 평가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다 밝혀질 일인데, 저도 이 조항은 아까 김용민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수사자료가 있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내 달라는 취지로 보여져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거는 아직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넘겨 놓읍시다.

○**박은정 위원** 이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거는 정리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 이 한 조항을 가지고 거수를 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거수 가능합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처음에 여러 기관들이 들어 있어서 제가 눈여겨 못 봤는데 우정사업본부는 결국에는 투표함 옮기는 거나 아니면 우편투표와 관련돼서 그래서 들어간 것 같고요. 조달청은 투표지 용지 부족 이런 거와 관련해서 들어간 것 같거든요. 다 근거 없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간 거라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수사를 통해서 확보를 하셔야지 이것을 임의제출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안 할 경우에 인정하고 거기서 끝내실 건 아니잖아요.

○**박형수 위원** 아니, 수사를 하는데 임의제출 받는 방식도 있고 강제수사를 하는 방식도 있고, 강제수사를 하기 전에 임의제출 받아서 그 사유를 추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하나로만 해라라고……

우리는 마치 압수수색이 수사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압수수색은 수사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압수수색 안 하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자꾸 하니까 지금 수사 관행 자체가 수사를 시작하면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임의수사를 하든 압수……

○**김남희 위원** 선관위만 받고 정리하시지요, 선관위 정도만.

○**박형수 위원** 잠깐만, 아직 제 말이 덜 끝났거든요.

○**박은정 위원** 아니요, 선관위는 수사대상이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제 말이 덜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형수 위원님 말씀 마저 들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간사 간에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해 봤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텐데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진짜로 이것을 거수해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조금 더 보류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8조(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입니다.

11쪽입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일단 결정된 내용이고요. 5항이 특별검사가 이첩받은 사건을 다시 관계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이첩 근거 규정입니다. 유상범 의원안이고요.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미완료된 사건의 귀속처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고 있는 규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것은 삭제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삭제하기로 어제 정리했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이것은 어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박형수 위원** 이것 삭제하는 것으로 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 같은데요. 이게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다시 받았다가 또 주고 하여튼 그런…… 이것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12쪽입니다.

제9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입니다.

특별검사보후보자의 수(바), 그다음에 특별검사보의 수(사), 그다음에 특별수사관의 수(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숫자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각 의원별 숫자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것도 아마 합의사항일 것 같은데요.

○**박형수 위원** 이것은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검사보와 수사관까지도 다 여야 합의로 하는 건가요?

○김한규 위원 원래는 파견검사, 파견 공무원, 수사 인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0조부터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3쪽입니다.

위쪽에 10조(특별검사등의 의무)는 그대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11조(수사기간 등)은 일단 체계는 유상범·한병도 안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본 수사기간을 며칠로 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국회에 보고하는 1차 연장 기간을 며칠로 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2차 연장을 며칠로 하실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5항·7항·8항은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6항 같은 경우는 미완료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장에게 인계하는 의무 규정인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라는 표현이 유상범 의원안에 규정돼 있는데 백혜련·한병도 의원안에 규정돼 있지 않아서 이것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대 특검에서는 이미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라는 표현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1조는 한병도·유상범 의원안이 다 동일해서 이의 없으시면 그 합쳐진 기간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조는 6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좀 이견이 있었는데요.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면 위원장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1조에서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고 1차 연장은 30일, 2차 연장은 30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전문위원 최기도 그리고 14쪽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도 넣는 것으로 정리를……

○김태규 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입법례나 기존 특검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었고?

○전문위원 최기도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안에는 들어 있는데 한병도나 백혜련 의원안에는 안 들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넣으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니까 일반 기존 특검법, 입법례에 비춰보면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또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김태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동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15쪽의 제일 위쪽 제12조(재판기간 등)입니다.

1항부터 5항까지는 결정하셨고요. 다만 제6항에서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에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그 규정을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의견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법원에서 요청해 가지고 이 조항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견은 6항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3항에 관해서도 심리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57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고 6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형수 위원 6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중계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현재도 저희들이 판결문 같은 경우를 비식별화해 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어찌다가 비식별화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공개되는 절차에 있는 법원공무원들이 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상 소를 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 때문이라면은 비식별 조치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외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 아니, 비식별 조치를 현실적으로 못 하지요. 중계를 해야 되는데 중계를 하면 비식별 조치를 할 수가 없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생중계는 불가능합니다.

○박형수 위원 생중계가 되니까 불가능하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요.

○김태규 위원 생중계를 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차단막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사람 실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신문하거나 물어볼 때 계속 거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부지불식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증인신문 할 때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걸 계속 빼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법원이.

○김태규 위원 대개 가명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런데 안 그런 경우에……

○김태규 위원 조서 같은 경우도 다 가명으로……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100개 비식별 처리를 했는데 하나 안 되는 경우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태규 위원 마약 사건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형제간에도 모르게, 제 경우는

친동생 불러서 친동생이 형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거든요. 친형제간에도 그렇게 차단 조치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지금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위낙 수사 범위도 광범위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왕에 여러 특검법에서도 이 조항들은 들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재판 중계는 좀 이례적인 일들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란특검 할 때 재판 중계를 어떻게 보면 최초로 도입했던 것인데요. 그만큼 내란 사건이라는 게 우리 헌정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계를 도입했고 그 이후에 유사 사건에서 1건 정도 더 도입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관위 사건 관련 특검에서는 중계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계 조항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다 들어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정말 중계를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중계 조항이 여기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사안 자체에 비춰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항이 만약에 빠지면, 만약에 중계를 꼭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6항이 들어가야 중계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어요. 6항이 빠져 버리면 4항에서 재판장이 중계를 다 불허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중계가 진짜 필요하면 오히려 6항을 넣어 주시는 게 맞고, 저는 중계 자체를 하지 말자는 입장인데 꼭 할 거면 6항을 넣어야 중계가 실효성이 생긴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이것 우리가 빼자는 게 아니라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중계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참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중계가 아마 예전에 녹화중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생중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계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일단 중계 여부에 관해서 법관들이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부담스러워하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런데 입법정책적으로 중계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려 주시면 적어도 6항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생중계와 녹화가 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재량이 있습니까, 재판장에게? 지금 이 조항 12조를 보시면 그런 게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것도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녹화중계보다는 생중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6항을 빼고 녹화를 하라고 그러면 뭐 그것도 방법인데요, 그거는 적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6항이 없으면 중계를 불허하거나 녹화중계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식별화 조치하게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 아시겠습니까마는 굉장히 가독성도 떨어지고 보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차양막 설치하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중계만 하면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차양막 자체가 없어진다면 아예 재판장의 증거 채택 여부가 채택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여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한규 위원** 이거는 차양막 이슈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문 과정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나 그 내용에 관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해서 공공 기밀, 국가 기밀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직업이라든지 당시 선거일 날 선거 방해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관여도라든지 이래서 나오는 이름들에 관한 거지 차양막을 설치해 갖고 그 증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아주 제한적인 것일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사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식별 조치를 완벽하게 하려면 재판을 녹화중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대로 가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한참 더……

○**김태규 위원** 아니, 차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증거 채부에서는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증거 채부…… 글쎄요, 어떤 적정한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이 자체가 증거 채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식별화 조치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계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대로 갑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항 살린다는 말씀이지요?

○**박형수 위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15쪽 아래, 제13조(사건의 처리보고) 그리고 14조(사건의 대국민보고)는 이대로 결정하셨습니다.

16쪽, 제15조(보수 등) 그다음에 16조 특별검사 퇴직 등 역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17쪽, 제17조(해임 등)도 이대로 결정하셨습니다.

18쪽, 제18조(신분보장)은 1항에 더해서 2·3항이 김은혜 의원안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검사 등이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우선하여 심판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탄핵심판 계속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논의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탄핵으로 정지가 돼 버리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걸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정지돼 있는 기간을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지 실질적인 수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런 취지라면 이 조항들이 유의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탄핵정족수가 돼야지 하지. 그쪽에서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거 넣어 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조항 같은데.

○소위원장 김승원 글썄요, 2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3항은 그 이전 논의에서 특검이 없어도 특검보에 의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누가 답을 주신 것 같아서 수사기간 미산입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특검과 특검보 모두를 탄핵하는 게 아니라면, 특검을 탄핵한다고 해서 수사 흐름이 중단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증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수사를 안 하고 이 수사기간을 제외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이렇게 3항이 들어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탄핵이 되면 직무는 정지되지만 특검의 대행이 지정이 될 거고 그러면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박형수 위원 아니, 수사권을 특검보도 가지고 있나?

○김한규 위원 저희가 다 탄핵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박은정 위원 모두 다요?

○김한규 위원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김태규 위원 아이, 경험이, 경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경험자가 있고를 떠나서……

○김용민 위원 그건 잘못을 하시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박은정 위원 그 특검대행은 어떻게 되나요?

○김한규 위원 그러면 절반 이상이 탄핵된 경우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소위원장 김승원 잠지만, 속기의 편의를 위해서 한분씩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전문위원님, 대행 규정은 없는……

○전문위원 최기도 개별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의 대행 제도는 두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가 특별검사가 이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서 수사를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없는 수사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생각을 했는데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막바지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거기서 탄핵이 돼 버렸다,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수사기간은 그 직무대행이 있는 기간 동안에 도과돼 버렸다 그러면 이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종결돼 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수사기간을 그만큼을 더해 줘야지 이 특검이 탄핵에서 각하가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려면 기간을 빼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박은정 위원 일리 있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3항을 특검보 1명 탄핵됐다고 해서 수사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건 우리가 있는 것 같고 특검인 경우에는……

○소위원장 김승원 특별검사보는 빼는 게……

○박은정 위원 특검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저는 무방한 것 같은데 특검보가 탄핵됐다고 해서 수사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실제로 그럴 일은 적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으시니까 그러면 특별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간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걸로 넣으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시지요. 2항에서 또는 특별검사보를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면 특별검사에 대해서만 우선하여 심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특별검사보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2항에 따른 탄핵심판 계속기간’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2항을 그렇게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8쪽, 제19조(회계보고 등) 그리고 20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그리고 19쪽에 이의신청 규정도 그대로 결정하셨고요.

20쪽에 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23조(벌칙), 24조(벌칙), 그리고 21쪽에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6조(형벌 등의 감면)도 그대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 1조(시행일), 2조(유효기간)은 그대로 결정하셨고요. 다만 3조(실효의 효과에 관한 특례)의 경우에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라고 하고 22조에 밑줄을 그어 놔는데 제22조는 특별검사의 징계요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백혜련·유상범 의원안에는 포함돼 있는데 한병도 의원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서 일단 논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놓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존 특검법 입법례라든가 그리고 특별검사의 징계요구가 실효의 효과 특례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22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두는 것은 어떠신가요?

의견 주시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전문위원 의견대로 합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견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예,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2쪽입니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제5조(공소청법 등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는 한병도 의원안을 일부 어제 소위 논의 사항을 반영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공소청법이 시행되거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시행되는 경우에도 제7조제7항—제7조제7항은 검사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그리고 제10조제5항은 특별검사보에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적용할 때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직무와 권한·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문안을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2항은 이 법에 따른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절차와 특별검사·특별검사보 또는 파견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은 공소청법 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법률의 시행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은 원안대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5조 2항의 표현 때문인데 2항 말미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형사소송 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까? 시점을 정확하게 고려해 보면 ‘이 법 공포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행 당시 종전의 형사소송법이면 시행이 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불분명하고 그러면 시행 이 후에 종전은 어떤 거냐 하는 게……

○전문위원 최기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김한규 위원 1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예, 1항에도……

○박형수 위원 ‘이 법 공포 당시의’ 이렇게……

○김한규 위원 예, 공포 당시로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 법 공포 당시의’ 동의합니다.

다시 앞으로……

좀 더 합의가 될 부분이 위원장 호선 문제.

○전문위원 최기도 4조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4조는 어떻게, 원내에서 한번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그냥 이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저는 가도 될 것 같은데…… 학식과 덕망을 좀 믿어 주시는 게 어 떤지까요?

○김용민 위원 그 추천위원회를 믿어 보시지요.

○박형수 위원 놔둡시다.

○김한규 위원 참고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수사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 데 최종 합의된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런데 12페이지에 특검 이 내용은 합의를 하지 않았습시다. 이걸 여기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상범 의원안·한병도 의원안이 다 동일하니까 이 안으로 가면 어떨까 싶 은데 여하튼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사항에 이 12페이지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사기간에 대해서 논의는 했는데 수사기간이…… 죄송합니다, 몇 페 이지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13페이지입니다, 13쪽 하단.

○전문위원 최기도 13쪽입니다. 총 120일로 아까 결정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 수사기간은 지금 유상범·한병도안하고 동일하게 잠정적인 합의가 됐으니
까 이걸 아까 저희가 정리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만 한번 저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2페이지도 있고 10페이지도 있는데요,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김한규 위원 참고로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20
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잠정적으로 얘기
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공
무원 70명 이내. 5, 20, 70, 70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박형수
간사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박형수 위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12쪽에 특별검사후보자는 아직 말씀을 저희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5명으로……

○김용민 위원 그러면 후보자는 10명을 해야지, 두 배 수로.

○전문위원 최기도 특별검사보를 5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고요.

○김한규 위원 예,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10명으로 해야지요, 10명.

○소위원장 김승원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면……

○김용민 위원 아니, 10명으로. 2배수로 하는 게……

○전문위원 최기도 5명인데 6명……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러면 10명.

○김용민 위원 왜냐하면 대통령 인사권이기 때문이에요 2배수로 추천해 주는 게 맞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10명 그다음에 5명, 70명, 70명.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까 부칙 규정에 공소청 검사의 경과 규정을 하실 때 특별수사관도 문
제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공소청에 수사관이 없어지고……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이
아니게 되어서 검사의 직무와 권한 플러스 특별수사관의 경우에도 파견 나갔을 때 사법
경찰관의 권한과 의무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칙에서. 그것을 좀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예,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7조, 9페이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대상 기관과 자료제출인데요. 이것은 원안대
로, 전례대로 가는 게 어떠신지요?

○김용민 위원 이것은 지도부가 결정해야 됩니다, 지도부가. 전례대로 가자는 입장인데
안 되면 지도부가 결정해야 돼요.

○박형수 위원 아니, 이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양쪽에 타협책을 좀 내면, 대상 기관은
이번에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선관위나 행안부, 조달청, 대통령경호실·경호처까지 나는

다 넣고 싶어요. 대상 기관은 다 넣고 자료제출 대상은 종전처럼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 자료를 예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사람이 판단해 갖고 뭐를 자료제출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합의로 처리하려면 대상 기관은 좀 늘리고 자료제출 대상은 종전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아까 선관위만 넣어도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대상 기관에 그것을 넣어 버리면 자료제출 대상에…… 이게 사실상 증거자료거든요, 이것을 특정 안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선관위나 행안부나 기타 조달청이나 이 모든 곳에 증거자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들을 임의로 제출받겠다는 거여 가지고 수사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임의제출을 강조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문제지요, 대상을 그렇게 넣어 버리면.

○**박형수 위원** 그러면 정당한 사유를 넣으면 되지요.

○**김용민 위원** 그런데 정당한 사유를 아무리 넣더라도 이게 따라야 한나라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박형수 위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김용민 위원** 그렇더라도 사실상 압수수색을 강제하는 그런 규정이 돼 버려요.

○**박형수 위원** 지금 형사소송법에도 공문서 조회하거나 뭐 하면 따라야 한나라고 돼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께서 절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전례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만약에 이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면 원내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또 협상 과정도 살펴봐야 돼서 김한규 위원께서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나도 우리 원내지도부에 전달해 놓을게요.

○**소위원장 김승원** 더 추가 논의할 사항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예, 4조 국민추천위원회의 경우에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할지 구체적인 결정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셨는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호선하기로 하신 것 아니에요? 박형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최기도** 예, 호선하는 걸로……

그리고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특검 후보 추천은 합의로 하는데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적위원 과반수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의결정족수를 결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승원** 추천위가 며칠 운영이 되는 거지요?

○**김남희 위원** 12일 정도 운영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2일 정도 운영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그걸로 하시는 것은?

○**박형수 위원**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지요, 뭐.

○소위원장 김승원 출석 과반수?

○박형수 위원 출석위원 과반수로 합시다, 일반 정족수.

○소위원장 김승원 출석 과반수 어떠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일반 의결 요건대로?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요.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여전히 한 쪽에서 셋 다 안 나오면 출석 과반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3인만 출석하면.

○김용민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일반론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기는 하네요.

믿고 맡길까요, 아니면 어떻게……

○박형수 위원 호선도 지금 학식과 덕망 때문에 맡기는데 그것도 맡겨야지.

○소위원장 김승원 학식과 덕망으로……

○박은정 위원 추천위원회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님이 또 긴급 만나서 무언가 해결하실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요. 너무 학식과 덕망 있는 분들한테 강제하지 않아도……

○박형수 위원 우리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읍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결론이 나신 거지요, 학식과 덕망에 맞게?

○김용민 위원 예, 원칙대로 그냥 하는 걸로.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가 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11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쟁점 중 가장 중요한 보완수사권 유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형소법 관련해서 3건의 소위 자료가 있습니다만 거기 중에 쟁점별 심사자료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쟁점별 심사자료 보시면 저희가 거기에 거의 공통된 쟁점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정리한 거고요.

그 자료의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기원·정점식 의원안에서 일부 수사권을 유지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드리면 검찰청법상 중요범죄와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 및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다음에 경찰, 공수처, 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보완수사도 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여 보면 일반, 통상적으로 송치된 사건은 관련범죄 인지 등 보완수사 범위에 큰 제한 없이 지금 현재 검사는 수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시정조치요구나 체포구속장소 감찰에 따라서 수사 중에 특별히 송치된 사건들이 있고 고소인 이의신청에 따라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송치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범위가 동일성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게 현행 규정 상황입니다.

여러 개정안들에 보시면 김용민·박은정·차규근·김한규 의원안, 손술·김남희 의원안에서는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홍기원 의원안에서는 송치사건에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 주자 하는데 11개 범죄와 4개 사건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홍기원 의원안에서는 11개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일부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거고요.

그 외에 피의자 전부 또는 일부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개 이상의 송치사건들이 관련사건에 해당하여 병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아까 말한 특별히 송치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동일성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기고 있고요.

정점식 의원안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보시면 송치받은 사건, 송부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이외에도 2호에 보시면 경찰공무원, 공수처 소속 공무원 그리고 파견공무원, 공무원들에 관한 범죄와 1호·2호의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인지 등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일부 범위를 더 넓히는 것으로, 직접수사권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정점식 의원안은 규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보완수사요구권 포함해서 검사의 재수사요청권까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보완수사요구권, 6페이지입니다.

현행 규정에 보시면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소유지, 사경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요.

개정안들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그대로 둘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가 차별이 나고요. 홍기원 의원안, 정점식 의원안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이 보완수사요구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안 같은 경우는 1개월 내 이행하고 그보다 짧게 기간 설정이 가능하며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점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행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김한규 의원안 같은 경우는 직무배제, 교체, 징계 요구 또는 다른 수사기관 지정해서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겨 있고요. 정점식 의원안 같은 경우는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홍기원 의원안 같은 경우는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로 가기 전에 이행 촉구를 한 번 더 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다음에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징계절차를 좀 더 강행시키기 위해서 직무배제 할 때는 20일 내에 직무배제를 해야 되고, 징계 요구할 때는 정점식 의원안 같은 경우는 30일 내 징계위원회에 요구해라 그리고 홍기원 의원안 같은 경우는 1개월 내 징계 처리를 해라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 예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9페이지,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피의자 등의 신고 또는 검사가 스스로 인식하여 사경에다가 사건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요. 사경이 시정조치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등을 행한 사법경찰관리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징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비교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신고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정조치요구나 사건 송치와 관련해서 다른 수사기관 이송까지도 넣어서 해 보자는 거 하고요. 또 차규근 의원 같은 경우는 사건송치요구를 삭제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재에 대해서 직무배제, 교체, 징계요구까지 넓히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하면 30일 내에 그 기관이 징계요구 의견을 회부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피의자 말고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자세한 안내 절차도 넣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서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수사중지결정 등 송치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위법·부당한 때에 재수사요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어떻게 재수사할지는 수사준칙에 세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을 해야 되고요. 새로운 증거 등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후에도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요청은 1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고소인 등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요.

사법경찰관은 요청일부터 3개월 내에 재수사를 한 뒤에 송치결정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불송치결정을 유지한다는 결과서를 검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경찰이 재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여전히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사는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서 시정조치요구 절차에 따라서 사건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수사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비교해 놓은 13페이지를 보시면 고소인 등에 대한 절차 보장을 위해서 이런 통지 규정을 넣자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 90일 내에 요청을 하고, 지금 수사준칙 내용을 올리는 겁니다. 예외도 허용하자 그리고 서면으로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하고 서류나 증거물을 경찰에게 반환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재수사를 사경이 할 때에도 3개월 내에 하도록 하자 이런 의무 내용을 명시하자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청을 사경이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송치요구를 하도록 하자, 지금 수사준칙에 있는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수사요청을 잘 따르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인사적인 조치를 요구하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저희 법안1소위에서는 총 9차례에 걸쳐 정점식 의원님 법안 등 총 11개 법안에 대한 독회를 마쳤고 그리고 34개 쟁점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그리고 개정안 예시 등을 중심으로 축조심사까지 완료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승원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차관님, 보완수사 왜 필요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현실적으로 검사가 사경의 수사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보완하고 양형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서 기소 여부와 사건의 적정한 처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얘기를 한 거는 법률적인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보완수사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60% 이상이 지금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거는 왜 필요하다고 그러냐면 내가 억울한 걸 한 번 더 호소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랬을 때 내가 다시 한번 2차

수사기관에 호소할 수 있는 거 그게 검찰의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 범죄 피해자로서는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만 형사피의자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지금 범죄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박형수 위원** 지금 차관님 설명에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보완수사요구로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주의를 사실상 차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의 사건 실체에 맞는 적절한 판단에 있어서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박형수 위원** 차관님 너무 어렵게 얘기하신다. 직접주의를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기 쉽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검사인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심증이라고 그러지요. 증거도 되고 심증도 되고 진술의 신빙성도 되는데 그거를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판단한 걸 가지고 내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타당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래서 지금 예컨대 법정에서 판사가 심문기일을, 심리기일을 열어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듯이 검사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건은 아니겠습니다만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증거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의 직접 진술을 확인해 봐야 사건의 실체와 그다음에 적절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보완수사요구권이 이게 큰 어떤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지금도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완수사요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수사지휘권이 있었어요, 검사한테. 그때도 수사지휘 문구 중에…… 차관님도 수사지휘해 봤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수사지휘 문구 중에 ‘일단 귀 의견대로 송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느 때 쓰는 말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당사자를 직접 면담해서 진술을 듣고 실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했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 문구를 쓸 때는 보통 검사는 두 번, 세 번 정도 수사지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더 조사를 해 봐라’, ‘이거는 이러이러한 증거에 비춰 보니까 이거는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보완할 거를 해 봐라’ 이렇게 지휘를 해요. 그리고 다시 수사를 했다 그러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검사가 다시 봤을 때 이거 이렇게 가면 원래의 수사 목적 또는 내가 지휘한 의도대로 되지가 않겠구나 그럴 때 다시 또 한 번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번 지휘를 해도 똑같이 결론이 경찰이 애초에 했던 대로 올라오면 그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단 귀 의견대로 송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구를 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차관님 얘기대로 수사지휘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게 어떤 건지 잘 판단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직접 수사를 해 봐야지 기소 여부를 또는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럴 때 그 문구를 씁니다. 그 문구가 있을 때는…… 수사지휘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

사지휘도 없고 수사요구를 할 뿐입니다. 요청을 할 뿐이에요.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완 장치로 체임요구권, 직무배제 등등 있지만 예전에 이미 그거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수사를 시정하게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아무리 정치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경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형사소송법 법안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보완수사를 다 폐지를 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다?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겁니다.

법무부의 입장 정확하게 뭘니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완벽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우려사항 등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 우려사항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 뭐 있습니까? 결국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렇게 의견을 피력했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소위에서 말씀을 드려 왔었고요.

○**박형수 위원** 그게 왜 필요한지를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부족…… 즉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사건 결정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 안 중에서는 검사의 당사자 면담권이라든지 사실관계 확인권 등등의 제도들도 개정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걸로 가능합니까? 그것 지난번에 내가 전체회의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 면담 그다음에 사실확인 등등 이런 조치가 있던데 이게 결국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안 된다는 증거예요. 그걸 완전히 폐지해 버리니까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당사자 면담이라든지 사실확인, 의견 진술 이런 것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뭘니까? 이게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잖아요.

검사가 임의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도록 허용해 주면서 말만 임의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의수사가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 강제수사도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수사의 효율성 달성하고 실제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 이제 7분 가까이 됐는데요. 1차 질의는 좀 마무리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 토론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1차 질의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 차관님께도, 지금 차관님께서 법무부의 차관으로 대표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물론 수십 년간 검사로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우려사항도 있겠으나 또 법무부의 차관으로서 그런 정부의 기조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큰 제도 차원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

리고.

김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차관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가이드라인 주신 건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배제하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등등의,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한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수사권은 전부 다 복귀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보완수사권도 안 된다. 수사권 전부 다 복귀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논의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이거 장관님한테도 여쭙봤던 건데 검사 제도 있어야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태규 위원** 왜 있어야 되지요? 보완수사권 없어도 있어야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있어야 됩니다.

○**김태규 위원** 왜 있어야 되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형사사법 절차가 검사의 큰 역할을 전제로 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형식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검사 역할을 못 하는데 그 기관 뭐 하러 놔둬니까?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 영국에서는 옛날에는 검사 제도가 없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때는 변호사가 대신 검사 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래서는 안 돼서 나중에 검사 만들어 넣었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영국 쪽으로 역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검사 다 없애 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소청이라고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영미 제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김태규 위원** 영미라고 해서 검사한테 수사권이 전혀 없습니까? 모든 영미법 국가는 검사한테 수사권이 전혀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실제 많이 가지고 있지요, 오히려? 그리고 수사의 주도권도 검사한테 다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보완수사권조차도 안 된답니다. 아예 수사권 자체가 안 된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당내 사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난번 30일 특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날도 제가 필리버스터 하면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하는데 이건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솔직한 법무부장관님의 속내였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저한테 와서 저보고 잘했다고 그러십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습니까?

솔직히 법조인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 다 줘도 별 문제

가 없지요. 그렇지요 솔직한 속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 아니면 아예 그렇게까지, 보완수사권은 고사하고 수사권까지 모든 게 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냥 영국식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냥 사건 하나 생길 때마다 경찰·변호사 고용해 가지고 그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 수행하게 하고, 그렇지요?

그거나 지금 새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검사 제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보완수사권 없어진 검사 제도하고 그 제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현저한 차이가 보이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보이시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가사법시스템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지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검사에 대한 복수심이지요. 검찰 제도에 대한, 검찰청에 대한 복수심이지요. 정치 진영의 검사에 대한 복수심 그거 만족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을 바로 정비하고 제도를 새로 만드는 부분과 관련해서 복수심으로 접근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차관님,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제가 차관님 속마음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신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85년도 법과대학 들어가고 나서 지금까지 법 공부하면서 지금도 배운다는 심정으로 법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85년도의 국가시스템을 지금하고 한번 대조해서 보시면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그때 사법은 잘못됐고 지금의 이 사법은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하면 그게 정의고 그다음에 수사권 없애면 그게 정의고,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게 다 정의 맞습니까?

검사한테 수사권 안 주는 게 정의고 기소·수사 분리하는 게 정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수사권 없었으니까 보완수사권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게 정의가 맞습니까? 그리고 공소청으로 이름 바꾸고 그게 정의가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선진입법이고 그렇게 해야만 선진사법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 그다음에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비판이 많았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도 변화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도상으로 변화도 일정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들은 대부분의 민생사건 처리에 있어서 영향이 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일정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 정도라는 게 수사권을 다 박탈할 정도가 돼야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민생, 제가 아까도 복수심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제가 사법부,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해 왔지만 또 법원이나 검찰에 대부분의 검사나 판사들 처리하는 업무 95%—저는 99%라고까지 말하고 싶습니다—다 원만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대한민국 판검사들이 그 정도의 양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는 어디든지 병든, 아니면 썩은 사과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 부분만 들어내면 될 일을 수사권 전부 다 바꾸고 없애고 이렇게까지 해야 맞는 건지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

○김태규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까. 어차피……

○소위원장 김승원 또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하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 질의 중에 복수심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혹시 삭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사실과도 다르고 모욕적으로 들려서……

○김태규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사전에 전제로 달았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삭제를 권유하고 싶긴 한데요. 그러면 그냥 이 정도로 속기록에 남기기로 하고 좀 유감이라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지요.

차관님,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도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청구는 검사가 하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부분은 수사 작용의 일환 아닙니까?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역시 검사가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건 역시 수사 과정의 일환으로 하는 수사행위라고 볼 만한 그런 작용 그것도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전부 박탈되었다’ 이런 표현이나 주장은 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수사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강제수사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 이것도 국민께서는 좀 인지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수사·기소 분리하는 이유가 공부할 때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대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고 합쳐지면 기획수사라든가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하는 검사가 폭주하는, 브레이크 없이 목표를 향해서, 골인점을 향해서 폭주하는 모습을 그 옛날부터도 보여 왔고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모처에서 시장에 대한 뇌물수수를 받던 사업가가 생을 달리한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또 들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찰에도 알아봤지만 자행을 하는 분들도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폭주가 또 인권침해 행위가 짝 있어 왔기에 그래서 저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이고 물론 70년 동안 검찰에서 짝 해왔던 그런 제도가 관행처럼 아니면 거의 전통처럼, 습관처럼 있어서 처음에는 거북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원래 검사와 법무부는 인권 옹호가 첫 번째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자꾸 하시다 보면 또 국민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보람도 느끼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3심 이거 항소해서 계속 재판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1심에서 무죄 나오면 거기서 끝난다라고 제도가 설계되면 1심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또 혹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길게 하는 것보다는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혹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도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수사에도 보면 수사를 받을 때도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받고 거기서 가부간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수사받는 당사자라든가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것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컨대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최근에는 거의 수사기록이 5만 페이지 또 많게는 20만 페이지까지 증거 자료를 막 제출해서 양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경이 수사할 때 검사가 그에 대한 인권 통제로 쓸데없는 수사기록들이, 증거기록들이 너털너털하게 첨부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차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더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김용민 위원님 아까 먼저 드셔 가지고……

○소위원장 김승원 아, 그럴까요?

○김용민 위원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김용민 위원님.

○박은정 위원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이 민주당의 복수심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저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차관님, 과거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의원, 나경원 의원,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 발의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던 거 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하셨던 것으로 일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발의했고요. 거기 보면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법들을 이미 국민의힘도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복수심에 불탔던가요?

자,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것은요 검사 개개인 혹은 권력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그러니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든다라는 권력분립 원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고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이고 사실 최초의 검사에게 권한을 집중해줬던 것은 친일 경찰을 견제하라고 해서 해 줬는데 지금은 보니 이 검찰에 집중된 권한 남용이 과거 친일 경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커져 버렸다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검찰 개혁을 시작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지금 제 역할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해 줬다라고 하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력해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견제가 그렇게 크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결국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사례를 짧게 말씀드리려 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우성 씨 사건. 그 사건에서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하고 검사에게 수사를 받을 때 여동생이나 피의자가 ‘이 사건 조작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검사가 듣지를 않고 넘겨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와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복 기소까지 했고요. 이런 사건인데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대한민국이 발각 뒤집어졌고 그 반성으로 국정원은 정보와 수사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정보와 수사 기능을 뗐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의 국정원 개혁이었지요. 그때 같은 궤로 가려고 했던 것이 검찰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 이거를 걸러내지를 못하고 확증편향으로 그냥 가더라 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고 했다가 직접수사 6대 범죄에서, 처음에 6대 범죄로 놔뒀고 그다음에 2대 범죄까지 놔두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개혁이었지요.

그러니까 그 개혁의 흐름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직전 윤석열 정권 때 검찰권을 얼마나 남용했는지를 온국민들이 다 체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가는 겁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 있었던 것이고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 대한 복수심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검찰 역시 그리고 차관님 역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그런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권력분립 관점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 안내를 드리면 아마 6시가 좀 지나면 저희가 식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할 예정입니다. 안내말씀 드리고요.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수사와 기소가 합쳐짐으로써 수사에 왜곡이 발생하고 수사권이 남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의 역사는 온 국민께서 목도하셨고 78년 동안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외치신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검사의 수사권 관련해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께서 당대에는 비록 경찰 파쇼가 대문제이지만 장차 검찰 파쇼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목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출현으

로 우리는 검찰 파쇼가 도래한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엄상섭 의원은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를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만간이 78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한겨레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오래된 연원에서 기한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 심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자유한국당 시절—국민의힘 전신이지요—의원님들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열렬한 외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나경원 의원께서는 토론회를 주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있다고 밝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 역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해 권한 남용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객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종섭 의원도 축사와 개회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주장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장하시는 검사 수사권에 대한 주장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우리는 검찰정권으로부터 국민이 내란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해결책도 없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대해서 충실하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고 검사가 공소관으로서, 법률가로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검경이 협력해서 국민을 위한 수사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심사가 되고 바람직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법무부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위가 국민들이 바라는 70여 년 동안의 검찰개혁의 열망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약 4분가량 발언하셨고요.

저도 박은정 위원님처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소위원장님,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요. 일단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답은 해야지 왜 답을 못 하게 해요?

○소위원장 김승원 시간이 충분하니까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차관님이 아마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하고 시작합시다, 시간 많다 그러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찰의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온 것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도에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과 협력 관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서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검사는 앞으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 집중되었던 권한이 이렇게 분산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정보와 수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약 13만 경찰이고 수사경찰만 하더라도 3만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서 기능적 권력 분립에 맞는 통제권을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에 맞는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등등의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즉 집중된 권력…… 수사기관 간의 설계도 적절히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앞으로 공소권자로서의 역할에 더욱더 충실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소 여부와 적정한 사건 처리, 기소 여부, 그러니까 공소권자로서 그다음에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검찰개혁을 얘기하십니다. 검찰개혁 해야지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뀌어야지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절대 선이고 검찰개혁인 것처럼, 수사를 전혀 못 하고 수사·기소를 100%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명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이냐? 저는 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법률의 시스템은, 사법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뭐니까? 사법 통제입니다. 법원이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이 수많은 인력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함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법률의 범위 내에, 테두리 내에다가 규율하는 것 그게 검찰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체계도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경찰의 활동에 법률의 옷을 입힌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찰의 저 막강한 힘에 대한 견제를 하고 거기에 법률에 입힐 옷을 입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발의를 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하려면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내가 직접 수사를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다, 경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똑바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셔서 제가 다 일일이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속영장 청구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이 여전

히 남아 있지 않느냐? 수사권 맞지요. 그런데 그것 만약에 헌법에 규정 안 되어 있었으면 되겠어요? 그것마저 다 없었을 겁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경찰이 수사해서 바로 법원에 가는 것을 한 번 걸러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검찰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영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을 개정해서 물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없앨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권 보장의 역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현재 시스템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해요. 이 사람 구속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경찰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검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법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3단계를 거쳐야지 인신이 구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절차를 생략해 버린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신청권을 없애 버린다? 두 단계로 줄어드게 돼요.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것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 없이 서류로만 판단을 해라? 그게 지금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요구권만 남겨 두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재판은 어떻게 바꿨습니까? 서류재판 하는 것을 공개재판으로 직접 심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 다 바꿨잖아요.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과거에 서류재판 하던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직접 심리하는 것으로 다 바꿨지요, 공판중심주의로?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변화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검사는 수사를, 기소를 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아무것도 못 하고 다른 사람이 한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바른 방향입니까, 그게?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검찰제도가 형해화되면 법원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법원이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부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장애가 생겨요. 경찰이 1차 수사한 서류 결과만 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해야 될 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법원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증인을 심문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밝혀낼 확률이 높겠습니까, 검사가 직접 사람을 앞애다 두고 수사를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확률이 높겠습니까?

사람은 일단 법원에 갈 때는, 증인으로 가든 뭐로 갈 때는 법정 분위기가 자유롭게 말할 분위기가 안 됩니다. 수사를 하는 것은 당사자를 앞애다 놓고 때로는 표정도 봐 가면서 때로는 저 사람의 한마디 말,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얼굴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도 봐 가면서 수사를 해야지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까 말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꾸면 모든 부담을 법원이 떠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성범죄 사건의 한쪽은 강제로 했다고 그러고 한쪽은 자발적으로 했다고 합시다. 거기에 다른 증거가 있으면 좋지요, 강제로 해서 상흔이 있다든지.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이 양쪽 당사자의 진술만 있다, 어떻게 판명을 해낼

겁니까? 검사는 그것을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보고 판단해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 법원은 가서 나중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도 양쪽 당사자의 진술만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진술. 거기다가 변호인이나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이미 오염되어 있을 겁니다. 그 진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차관님한테 물어볼게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한테 이것을 물어보면 굉장히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물어본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답이 처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대답은 뻔하다고 해도 대답을 할 때 저 사람 표정이 어떤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인지 처음 듣는 표정인지 여기에 따라서 수사의 성패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박형수 위원 그것을 일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고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정도 해요?

○김용민 위원 잘 아시네요.

○소위원장 김승원 9분 가까이 하셨습니다.

○박형수 위원 9분?

○소위원장 김승원 예.

○김태규 위원 이제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또 합시다.

○김태규 위원 이렇게 검찰 수사권 남겨 놔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이 우리 국민의 힘이나 아니면 우파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우리한테 잘 봐주고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사실 지금 정권은 민주당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서슬 퍼렇게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다치는 건 우리 쪽이 더 잘 다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 사람들 엄청나게 수사받고 기소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오히려 저 역시도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냥 ‘검찰수사권 폐지하고 잡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예 특검법에도 검사들 썩 다 빼 버리고 그렇게 잡시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형사재판장을 하고 있는 현직 법관한테, 제 대학 후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묻은 것이 아니고 21년도 그 무렵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나올 때 그 무렵입니다. 저도 형사단독재판장을 오래해 봤고 그 친구도 당시 단독재판장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가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맞춰서 판단을 안 하고 넘어오니까 판사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법률적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넘어오

니까 판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기록을 보면서 구성요건 찾는 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권한의 집중 아니면 견제와 균형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차관님 그 말씀 하시길래, 14만 경찰병력 얘기하시길래 그 부분은 저도 계속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경찰 14만 병력 맞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검찰청 전부 다 해서 얼마나 됩니까? 수사관까지 다 합쳐서, 일반 직원들까지 다 합쳐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1만~1만 1000명 사이 정도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비교도 안 되지요? 군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조직이기 때문에 비록 조직은 작고 힘은 없고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팔은 없어도 법률로서 사법적 통제를 하자고 검사제도를 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14만 병력의 견제와 균형을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14만 병력에 독자적으로 모든 걸 판단할 권한까지 다 쥐 버리면 이거야말로 괴물 아닙니까? 1만 명이 수사권 행사하면서 이리저리하는 게 그게 괴물입니까, 14만 병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괴물입니까?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누구든지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드릴게요. 비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했습니다. 의료보조인, 간호사나 아니면 이런저런 임상병리학자나 검사하는 보조 인력들의 판단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번에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약물치료만 하고 말아야 될지 아니면 퇴원을 시켜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을 문진이라도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문진도 못 하게 합니다, 그냥 서류만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의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유하고 지금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상태에서의 검사들 입장하고 차이가 있어 보이십니까? 동조하시지요, 제 생각에? 같은 생각이시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뭐 대단한 견제와 균형 이런 것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낙타가 텐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검수완박 하면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그러면서 준칙 바꾸고 중수청법 만들고 이렇게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씩조금씩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 없애 버리려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이전 단계, 현행 단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 검찰청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차관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짚은, 한 번 짚은 용기내셔서 확인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답변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가 그렇게 정의고 그렇게 필요한 거면 특검은 왜 수사·기소 분리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특검에서는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고, 일반 사건에서는 그게 비효율적으로 되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다른 것 얘기할 필요 없이 그것 하나만 얘기하면 됩니다, 수사·기소 분리네요. 어떤 느낌이나 하면요, 반대 한 마리 나왔다고 그냥 초가삼가 다 태워 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 하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그래서 개정할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고 전자화시켜서 다 남기도록 하고 그것이 나중에 수사가 종료된 후라든가 혹은 사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사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사 과정에 증거 은닉이라든가 은폐라든가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책임수사제, 핑퐁으로 인한 사건 지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를 처음 시작하고 또 그 수사에 함께 협력했던 검사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것도 제도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등등의 개선 제안이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알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녁식사 하신 후에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15항까지 11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쟁점별 심사자료 쟁점 중에 위원님들께서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34항 부칙까지 그 범위 내에서 토론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박형수 위원** 일반적인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조금 전 저녁식사하기 전에 김태규 위원님께서 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적인 복수심에서 의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도 거기에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고 다른 위원님도 반발을 하시던데 저는 복수심이 공적인, 사적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보복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민들 60% 이상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론조사가 또 항목이 잘못됐느니 어쨌느니 다른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폐지를 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2~3배가량 지금 더 높고 국민들 많은 분들께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범죄피해자들, 대표적으로 지금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 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경찰의 수사만으로서’는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 열거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난번에 검찰인가 법무부에서인가 그런 사례들, 보완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들 여러 건을 해 놓은 걸 봤는데 사실은 그런 수사들은 매일 검찰에서 우수 수사사례 이런 걸로 해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고 검사들한테도 그런 사건들을 수사를 해야지 물론 개인적으로는 인사고과도 좋아지는 것이고 또 검사로서 일하는 자부심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다 그걸 장려하고 열심히 기록을 보면서 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발굴하려고 해요.

차관님, 그런 사건들 굉장히 많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검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도 이 보완수사권을 다 없애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공적인 보복이 아닌가, 검찰에 대해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것은 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 권력을 쪼갰다고 하면 경찰에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검찰이 과거처럼 모든 범죄에 대한 인지권한을 가지고 있고 불기소 사건, 기소 사건 몽땅 다 검찰이 처리해야 된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진 않아요. 저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필요한 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최소한 불기소 사건에 대한 항고 기능 정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고, 영장청구권과 기소 사건에 대해서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자율권을 좀 주고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100%, 아예 보완수사권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가 202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수사지휘권도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요청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이 2022년인가요? 그때도 보완수사권은 건들지 않았습시다. 처음에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가 그것을 2개로 줄이면서까지도 보완수사권은 유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의 민주당 의원님들도 거기 동의를 했던 겁니다,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2022년 검수완박 입법 당시와 지금이 갑자기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도를 바꿀 때는 거기에 확실하게 달라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범죄가 많아졌나요, 그 전보다? 아니면 억울한 피해자가 더 많아졌나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예요. 부패범죄로 기소한 겁니다. 그걸 기소했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공적인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이제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본인은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나 하면 직접 수사할 수 있던 권한들을 제한을 해

서 아예 못 하게 됐지 않느냐, 그랬으면 검찰개혁은 이제 달성이 된 거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완수사권까지 아예 다 없애 버리겠다고 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도저히 못 있겠다, 할 의지도 없고 할 일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절대진리가 아니잖아요. 적절한 정도로, 권한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도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배분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제도적인 설계이지 문제가 있다 해서 아예 완전히 싹 빼 버린다? 그러면 법원이 오판을 많이 한다, 상고심에 가 가지고 뒤집히는 게 많다, 항소심에 가서 뒤집히는 게 많다, 아예 법원의 1심 재판부를 없애 버릴 거예요? 법원에 오류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법원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릴 겁니까? 저는 이 권한 배분을 둘러싸고는 적절한 정도로 배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이 마치 무슨 절대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우리처럼 여전히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에서도, 영국에서도 아까 김태규 위원님 얘기하신 중대비리수사청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은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인소추주의고 사인소추주의에서도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이 대신하는 공중소추 비슷하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 기소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 소년들이 무슨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게 나중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서 그래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대형 금융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처벌하지 못하고 다 줄줄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대비리수사청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와 비교를 해 보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게 된, 이렇게 영국은 제도를 만들어 간 거예요.

미국도 대형 금융 사건이나 조세 사건 이런 데는 검사가 아예 팀을 구성해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이진수 차관님, 그런 입법례 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게 수사·기소는 무조건 분리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분리해야 될 때가 때로는 통합을 해서 같이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게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검사 또는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해서 그렇게 많은 폐해가 생겼다면 그걸 지금 다 못 하게 했잖아요. 검찰청법 다 개정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피해자 인권을 더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이 보완수사권만큼은 남겨 두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면 이게 필요 없지만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례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만 했으면 내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지요. 어떤 당에서 당론으로 이걸 한번 정했다고 해서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그걸 밀어붙인다?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 놓으면 그 피해는 일이 년 만에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수년간 이것들이 쌓였을 때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보완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완수사에도 폐해가 우려된다, 남용이 우려된다면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보완수사를 시작할 때는 최소한 무슨 위원회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지 그걸 남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문제가 생겼다고 그걸 아예 없애 버린다? 그것은 아까 누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이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고 억울한 범죄피해자들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그것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용기, 우리 중지미수 배울 때 되돌아가는 황금의 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용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또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박형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과 기소 분리의 원칙이 왜 논의되기 시작했나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보장과 실제 진실 발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에 비해 더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남용해서 여러 폐해를 낳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논의 과정에서 혹시 균형을 잃고 국민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걱정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개혁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길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또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설정한 이상 이 원칙이 잘 자리 잡게 하려면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해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이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수사를 맡고 다만 그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잘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와 제어를 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이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 진실 발견을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제도가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관련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기로 하

고 개별법에 그 내용을 담기로 해서 제가 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지금 보완수사요구로는 보완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한다고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고 이것을 경찰과 검찰이 떠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검찰도 책임성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요구해 가지고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실효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도 계속 논의를 하고 또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필요할 경우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해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개정안의 내용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전부 한꺼번에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한 번에 통과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논의를 하고 더 좋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정말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해서라도 필요한 내용을 제도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논의를 잘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남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사·기소를 분리한 취지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서로 대립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협업하라는, 협력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제도를 설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자꾸 쟁점이 보완수사 존부에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보완수사는 송치 의견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검사가 보완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으로서 사실은 국민이라든가 혹은…… 저는 수사의 시작은 영장청구를 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본인의 이름으로 책임감을 갖고 압수수색영장 청구될 때부터 그 수사에 서로 관여하거나 혹은 협조를 해서 그 수사가 보완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완결된 수사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사관 개인의 역량이나 혹은 선의에 맡기기에는 개인별 격차도 크고 그 능력에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수사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작업들, 예컨대 각 범죄별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을 리스트화해서 그것들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류의 제도 설계 등등을 같이 고민하고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관련 조직법에 담아야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백이 증거의 여왕이었던 시절이 지난 지는 한참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 자백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선배들의 격언도, 법언도 들리기는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IP라든가 또 SNS라든가 그런 개발로 인해서 꼭 피의자나 혹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AI를 통해 수사에 도움을 받는 방향도 곧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시작이 수사·기소의 분리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사명감을 갖고 저희는 지금 법안심사에 임하고 있고요. 어떤 사적 복수심뿐만 아니라 공적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보복.

○소위원장 김승원 보복인가요?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그러면 짧게 토론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잠깐만 얘기……

수사권으로 보복한 것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권이었지요. 2022년 당시에 검찰수사권 축소, 직접수사권 폐지·축소 당시와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나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르고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검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그렇게 강력하게 국가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사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그러면 너희들은 보복으로, 복수로 검사를 없애 버리려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막말입니까? 검사 제도는 그대로 있어요. 공소관으로서 공소제기와 유지, 형벌에 관한 집행,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호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호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기소 분리한다면서 특검은 왜 하는가? 특검은 제한된 대상, 제한된 죄명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하는 겁니다. 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한 폭력입니다. 그것이 매우 폭력적인 형식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한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의 수사권,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에 수사권을 주게 되면 검사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죄명에 대해서 언제나 기한 없이 검사 2300명이 모두 특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과 기소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하면서 왜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은 특검이라는 제도,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 두 가지를 저는 분명히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속 수사권이 있다, 검사들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 있습니다. 직접수사권도 있고요. 외국에 있는 수사권, 검사의 직접수사권, 기소권과 같이 결합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수처이고 상설특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윤석열 등 특수검사들의 수사 과잉으로 정치면 1면에 항상 검찰이, 윤석열 정권 내내도 그랬고 검찰의 특수부가 한국의 정치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런 수사 과잉의 시대, 특수부 검사들이 정해 주는 정의의 개념, 정의, 그것이 가스라이팅한 국민들, 그렇게 해서 검사만이 정의롭다는 시대를 살았던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가지고 지금 2300명 검사들에게 상시적으로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김태규 위원님 토론하시고, 이제 대안 중심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소위원장 김승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이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서요. 그동안의 경과를 모르니까, 향후에 오늘 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의향이신지.

○소위원장 김승원 경과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때 퇴장하셔서……

○김용민 위원 그리고 속기록을 보고 오셨어야지요.

○김태규 위원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맙시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경과를 물어보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김태규 위원님 토론하시면 저희가……

○김태규 위원 보좌진들한테서까지 비웃음이 나오면 저로서는 상당히 불쾌해지네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공적인 복수심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요. 복수심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아마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상대의 말이 불편하시면요 상대에게 하는 말도 굉장히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독재 윤석열, 윤석열 독재정권, 내란, 그렇게 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상대는……

저 역시도 이재명 좌익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 나오기 전까지 전혀 그 말 안 썼습니다. 적어도 서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으면 저 역시도 배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협력하는 관계라고 그랬는데 협력하는 관계면 검경 간에 수사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차관님, 그동안에 경찰과 검찰 간에 아주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 불쑥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과기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본적으로는 범죄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범죄자가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일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있었지요. 있었고, 특히 경찰대 출신이라는 엘리트 경찰들이 검찰의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했지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발단이 되어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정치권까지 퍼지고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지요. 그러한 갈등의 기초 위에서 오늘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협력을 갑자기 잘할 거다,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만약에 대법원을 대심판원이라고 바꾸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대법관을 심판관이라고 그러면, 대심판관이나 아니면 법관을 심판관이라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헌법과 배치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검찰청은 왜 공소청으로 바뀌도 괜찮지요? 왜 굳이 바꿀까요?

검사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의 권한 중에 기소권이 있으면 그 기소권을 가진 기관을 그냥 검찰청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소청이라고 바꿀까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에 공적 공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굳이 굳이 나는 ‘검찰청’이라는 단어조차 듣기 싫은 겁니다.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은 공소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헌법에 합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쭙볼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굳이 공소청이라고 바꾸고 그러면서 검찰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대한민국 법전에서 삭제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서 검사라는 말을 계속 쓰고.

그러면 공소청도 앞으로 둘 건데 차관님 입장에서는 공소청의 장은 어떻게 불러져야 되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청법에 검찰총장으로 하기로 입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관이 공소청인데 그 수장은 검찰총장입니까? 왜 이런 불합치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게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지금 명칭이 그대로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검찰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던 내용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실무에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보냈는데, 송치의견으로 보냈는데 검사가 아무래도 재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하라고 내려보내게 되면 그 검사는 그 사건 때는 거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은 사건을 종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고 나서 수사 되면 다시 또 올라오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그때는 또 검사 바뀌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검사에게 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만 그 검사가 해당 부서에 근무하지 않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그 청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검사가 배당받게 됩니다.

○**김태규 위원** 오히려 바뀐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실무적으로 검사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검사는 새로 사건 파악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수사는 다시 처음부터 재파악하고 당연히 굉장한 시간이 또 걸리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아무래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그 검사가 또다시 보완수사 요청을 하게 된다면 또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의 시각에 따라 무한 반복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형식논리지만, 현실에서는 잘 안 일어나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도 검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쭙볼게요.

수사권과 관련해서, 저는 앞서 모두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미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진 마당에 경찰의 수사권을 없앨 수는 없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검찰이 완전한 수사권을 가져도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당에서 제안한 것하고는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검사들은 갑자기 강도 수사하고 절도범 수사하러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검찰수사관 아니면 검사가 절도범 잡으러 다니고 강도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현장을 뛰어다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안 되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태규 위원** 결국에는 경제사범이나 특수범죄들 처리하고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경찰들한테 경제사범들하고 특수범죄들 맡겨 놓으니까……제가 두 달 전까지 실제 송무를 했습니다, 변호사로. 세월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수사 능력이 안 되는 경찰들이 그 사건들 검찰한테 자연히 안 미루겠습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다 쥐도 자기들이 잘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지요? 예측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검사로서 오랫동안 수사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특히나 지금 경찰수사 관련해서 경제범죄 그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또한 불송치 결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실제 제가 거기서 법률상담 해 줍니다. 경찰들이 재산범죄와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달리니까 변호사보고 자꾸 의견서 써 달라고 그러니까 써 달라고 그러면 제가 써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보십니까? 법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그리고 이렇게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나서 국정원도 수사권 잃었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청주 간첩 사건 이후로 국정원에서 간첩 잡았다는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국정원 말고 경찰에서? 못 들으셨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태규 위원** 검찰 수사권 조정한 이후에 대형 게이트 사건이나 대형 재산 범죄 같은 거 터지는 거 잡았다는 소리 경찰 쪽에서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언뜻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정치 사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경찰에서 뭔가 대형 게이트 사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언뜻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예전하고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경찰에서도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아무래도 검사가 기존의 법률 전문가이고 또한 경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 그다음에 법률적 판단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가 조금 더 인정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규 위원** 70여 년 이상을 쌓아 온 경험의 축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1~2년 만에 회복이 되고 만들어지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10분 가까이 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만하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밖에서는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기록을 어디에다 놓고 돌리면 준비 서면이 10분 만에 나온다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경찰은 수사를 못 하고 어디는 수사를 잘 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국가도 이제 AI를 완전히 도입해서 기관도 그런 것을 활용하는 시대로 곧 1~2년 혹은 2~3년 안에 가게 될 텐데요. 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형사소송법이든 수사 역량이든 등등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점은 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박형수 위원께서 5분 안에……

○**박형수 위원** 뭘 또 5분만 줘요.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했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가 향후 민주당 등 마련한 대안을 좀 배부를 해 드리고요. 대안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고해 주신 김용민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토론이나 비판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 하나씩 다 토론할 수 있겠지요? 그건 이따가 토론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토론 듣고 자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게 워낙 할 말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정치검찰 또는 대형 사건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부패나 이런 데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특수부 검사가 아무리 뭘 수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비리가 없으면 부패가 없으면

수사를 할 게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총량적으로 부패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가 앞으로 더 투명화되고 객관화되고 선진화된다면 저절로 그게 줄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마치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회 전체를 한쪽 면만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사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협력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협력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통제를 하는 관계, 아까 제가 법률의 옷을 입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법원과 판사와 검사가 협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적절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입니다.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걸 협력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검사의 또는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통제를 하고 적절한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완수사권 얘기가 또 지금 나오는데요. 보완수사권의 내용이 증거가 뭐가 빠졌으니까 그거 수집해라 또는 어떤 참고인 조사를 해라 그거 조사하면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조사해라, 그러면 쉽지요. 보완수사요구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근데 보완수사요구 또는 보완수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대부분이 같은 증거를 가지고 증거 가치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신빙성의 문제입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이 말도 이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는데 어떤 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고 보완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빠진 부분을 누락시킨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거 추가해라, 이 사람 조사하는 거 빠졌으니까 이 사람 조사해 가지고 증거 확보해라. 쉽지요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보완수사요구만 해도 돼요.

근데 신빙성의 문제로 가면 요구로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남겨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심리는 A라는 판사가 하고 판결은 B라는 판사가 하도록 그거를 수사·기소 분리처럼 심리와 판결은 분리돼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따로따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가 제가 지금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일부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보완책으로 내세운 게 중수청에다가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자,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공소청에서 검사가 그 기록을 봅니다. 그 기록을 봤더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중수청으로 다 보내요. 그러면 중수청에서 다시 또 기록 검토하고 수사를 합니다. 이게 다시 공소청으로 또 옵니다. 결국 공소청 검사가 판단한 자료로 쓰이게 되는 거는 경찰 또는 중수청에서 작성한 서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많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깁니까. 경찰이 수사도 다 해야 돼, 공소청 검사가 다 기록 새로 검토해야 돼, 그걸 다시 또 중수청 수사관한테 주면 중수청 수사관은 그 기록 다 다시 검토를 해야 돼.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인력을 낭비하고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 송치를 하겠다. 전건 송치를 한들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건 보완수사요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일곱 가지 범죄에 대해서 전건 송치를 받더라도.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의

그 차이는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남습니다. 그리고 7대 범죄에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깁니까? 7대 범죄 아닌, 당장 살인 사건이 7대 범죄가 아니에요. 거기의 피해자들,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이런 사건들은 전건 송치 대상에도 빠져 있어요.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전제로 해 놓고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허점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시다마는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둬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서 함께 마련한 대안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는 동안 잠깐만 개정안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 김용민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사·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서 검사의 직접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 등 법률이 정한 수사기관으로 정비하는 한편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협력 및 역할 관계를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및 영장청구 여부 판단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의 사유·내용, 이행 기간, 이행 결과의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관계인 등에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하여 직접적인 증거 수집이나 강제처분을 금지하였습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를 함께 제공하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이의제기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자료 제출, 의견진술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 및 공소 업무의 처리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등재하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장이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압수수색 검증 과정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하고 피의자 신문 등 조사 과정의 녹음 근거를 마련하며 수사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입수한 문서, 기록,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수사 전 과정의 기록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조문 및 내용에 대해서는 수고해 주신 김용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저희가 교섭단체 대안으로 안을 만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존에 논의했던 것들을 통합하기도 했고 일부 약간 수정되거나 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조(구속영장의 집행) 등 관련 영장 집행에서 검사의 촉탁과 지휘의 두 가지 버전의 법안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휘로 일괄해서 정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조항들을 신설했는데 먼저 1항의 후단을 신설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해서 검사는 사건 책임, 사법경찰관은 수사 책임의 책임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항은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법률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했고 3항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가장 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196조는 검사의 수사권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은 다 삭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무관, 총경 등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으로 인정했던 것을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수본 등에서의 지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수용해서 이렇게 정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조의2(보완수사요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에서 기존에 논의했던 것을 포함해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방금 박형수 위원님께서도 이게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한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수사는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의 요소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수사의 중요한 목표가 효율성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수사할수록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인권을 최대한 보호·보장하면서 가는 장치들을 마련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7조의2(보완수사요구)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송치사건이고 1항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의 경우에는 197조의3 및 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중요한 내용으로 논의했던 것들을 추가해서 정리를 했는데 KICS에 보완수사요구와 관련된 것들을 다 등재하고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수사기관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KICS에 그 사건이 해당 검사의 사건으로 계속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사건 관리를 그 검사가 끝까지 추적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2항, 3항에 넣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항은 검사가 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3항의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여부를 검사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정했고 이행 내용을 포함한 종합 수사 결과를 정리하여 사건 기록과 함께 다시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더 긴급하게 할 수도 있도록 해서 그 기간 내에 송부하도록 한 다라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4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6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4항에 따른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그 이행의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정리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행 결과 내용을 검사에게 미리 보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과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수사 이행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항은 기존에 있었던 징계 등의 내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8항이 방금 얘기 나왔던 것이기는 한데요, 각급 공소청의 장은 보완수사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 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에서 3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3항에 보면 후단을 신설했는데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검사는 245조의13을 준용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245조의13은 고소인, 피의자 등등에게 사실관계를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넘어가고 9항을 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8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10항에서는 검사가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사건기록 송부요구 등 여러 가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197조의4(수사의 경합)의 경우에도 1항, 2항을 만들었고 특히 1항은 기존에 논의했던 내용들이 중심이고 2항은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197조의5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라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서 암장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의 199조의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중요하게 논의해서 새롭게 신설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모든 사건기록을 전자적 관리 그러니까 전자문서화해서 전자적으로 다 저장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다 빠짐없이 기록·등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항은 그렇게 KICS에 빠짐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등재하도록 했고.

2항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기록을 KICS에 다 등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보완수사가 돼서 돌아오는 모든 기록 자체가 전자적으로 다 등재돼서 관리하고 검사와 수사관이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00조의3(긴급체포) 2항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었지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했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5조의2 이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검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검사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검사가 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부분도 저희가 소위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했고 중요한 과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설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압수·수색하는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부여했고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서 예외를 두었습니다.

2항에서는 녹화를 하는 경우에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역시 이것을 영상녹화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했고 4항에서는 피의자·피고인, 그 변호인 또는 압수·수색·검증을 받은 자는 열람 또는 복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2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 혹은 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라는 이견이 있는 법들이 있었으나 3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통합 조정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도 저희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항 보시면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피의자신문 전후로 이루어지는 사법경찰관의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어떤 조사들이 있을 때,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제245조의5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항에서 사건의 송치 혹은 기록 송부를 규정했던 조항이 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해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것을 해석상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명문화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도 후단을 신설한 게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후단에는 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서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은 기존 고소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던 제도를 고발인까지 확대했는데 모든 고발인으로 확대하지는 않고 2항을 신설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3항을 또 신설해서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했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45조의8(재조사요구)에서도 후단을 신설해서 재수사요구하는 경우에 검사는 같은 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2항도 좀 추가해서 이런 경우에도 전자사법시스템에 구체적인 서면을 다 등재하도록 하고 고소인에게도 통지하는 것으로, 재수사요구도 KICS를 통해서 다 등재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3·4·5·6항도 기존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항까지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직무 배제 등에 대한 내용들도 197조의2(보완수사요구)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부분입니다.

검사가 송치된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견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게,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소위 말해 별건을 발견했을 때에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를 발견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1·2항에 따른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기관 혹은 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자는 해당 범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항은 그 결과에 따라서 기록을 추가 송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별건 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245조의10의 2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특사경 관계인데 요—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항에 있던 수사 지휘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후단을 신설했는데 지도와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지도와 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한편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공소청법에서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저희가 삭제·폐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렇게 개정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항에서는 245조의5부터 245조의8까지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송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다만 2항은 제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준용 규정을 정비했구요.

245조의11 이 부분도 저희가 논의해서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고소인등의 이의 제기인데요. 고소인 등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유로 수사 개시한 후 아까 3개월 내에 종료하도록 했는데 3개월을 넘어서 6개월 이상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이의 제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를 침해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1·2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폭넓은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서는 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수사공무원의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 등에게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소인은 다시 한번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4항의 경우에는 이런 민원제기와 관련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나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245조의12도 역시 추가로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고소인 등 그러니까 피해자 등이 사건이 불송치 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 불송치됐는지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해서 정보접근권을 인정해 달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조문화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5조의12 1항은 고소인 등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의 경우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예외 규정으로 두었고요. 그리고 3항은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도 등사한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항·5항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사생활 침해나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6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제한들이나,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 피고인이 열람·등사한 것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처벌하는 것과 동일하게 맞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5조의13 역시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신설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 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은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3항은 ‘검사는 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2항에 따른 고소인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4항은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수사, 재판, 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판결문이나 전과 조회 같은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기록에 편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넘어가고 260조(재정신청)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신청은 저희가 논의한 것들을 종합해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관할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신청권자를 확대했습니다. 1항의 단서를 삭제하는 대신에 1호부터 8호까지를 추가했는데 1호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2호부터 8호까지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재정신청권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가지의 재정신청이, 고발인도 재정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대를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서는 기존에 논의했던 것처럼 2호·3호를 신설해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리고 3호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기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논의했던, 발의했던 것과 유사하고요.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494조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인데요. 기존에 검찰청 직원의 형 집행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과거에 수사 파트에 있었는데 이것을 재판의 집행 부분으로 이동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항. 공소청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 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피고인·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 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직무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소청 직원이,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직무는 8급·9급 공소청 직원이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공소청 직원이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부칙안 예시에 대해서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저희가 아직 본칙을 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강의 부칙안을 만든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의 원칙적인 시행일은 10월 2일로 맞추되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의 녹음이라든가 압수·수색영장의 영상 촬영 같은 것에서는 경찰청에서 1년 정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하였고 지금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확대되면 준비를 위해서 또 시행일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부칙은 원칙적으로 10월 2일로 하되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법원이나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하는 규정을 단서로 빼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조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 시행을 위해서 적용례 조문들이 필요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맞춰서 적용례 조문들을 짚 줄 거고요.

부칙안 제4조를 보시면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서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월 1일 기점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대해서 4조에 넣었습니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이 내용은 지금 공소청법 부칙에 일부 들어가고 있어서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수사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청법에 들어간 내용 그대로 해서 90일까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90일 정도 수사권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미 수사를 하시다가 검사들이 작성한 여러 가지 증거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한 서류와 그리고 직무 수행 중 모든 조서들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사와 관련된 경과조치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 법 개정인데요. 지금 타 법 개정은 한 180여 개지만 저희가 관련 부처와 협의가 다 안 끝났고 국조실 TF에서도 계속 관련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서는 검찰총장이 그동안 수사 의뢰를 받던 그런 것들, 5·18 민주화운동 등과 같은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발생하면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바꾸는 내용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쪽으로 저희가 주로 그동안 총장이 의뢰받던 그런 내용들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쪽으로 받도록 조문 정리가 된 내용을 짚, 보시다시피 끝까지, 한 28개 정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확실한 부분부터 이번 형소법 타 법 개정을 넣고요.

추가로 구두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완수사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시정 조치 요구하시다가 다른 범죄,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사건 이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수청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좀 넓히는 부분도 타 법 개정으로 넣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대안 마련하기까지 총 아홉 차례의 법안1소위의 토론과 논의가 있었는데요.

우선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사실 확인, 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갔는데요. 현재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대검 예규로 시행되고 있어서 그러면 만일에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면담 규정을 201조의 구속에 관한 규정의 6항으로 해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의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영장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문하고 맞춰 가지고 201조 6항에 그 부분도 넣어야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201조 6항에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면담이라든가 혹은 소통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용민 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용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좋은 의견이라고……

○소위원장 김승원 동의하신다고요?

○김용민 위원 예.

○김남희 위원 저도 하나……

○소위원장 김승원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지금 245조의11의 제3항에 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죄송합니다. 몇 조 몇 항인지 좀……

○김남희 위원 제245조의11 3항인데 여기에 보면 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조치에 이의가 있는 날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되는데 조치가 없을 때 기간이 지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치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법상으로는 없어서 2항에 이의 제기를 받으면 1개월 내에 알려 주어야 한다면 이런 기한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기본 전제가, 대전제가 바뀌다 보니까 사소한 것으로 그것을 다 막아야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받아 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파악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기회를, 다시 시간을 주시기를 저희들은 요청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논의했던 것들이지 새롭게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논의했던 것을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존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대로 논의를 더 이어 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너무 개별 조항에,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취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취지만 말씀해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위원장님.

○**박형수 위원** 내가 먼저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형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은정 위원님 하세요.

○**박형수 위원** 오늘 제가 김용민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전문위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 교섭단체 대안이라……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이것은 교섭단체에서 준비하신 거라서 저는 사전에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 조문에 대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은 아예 없는 거네요?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이미 다 있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어떻게 이미 다 있어요, 이제 이것을 받았다는데?

○**박은정 위원** 논의를 다 했지요, 아홉 번이나 했는데.

○**김용민 위원** 이미 다 기존에 논의해서 의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을 전부 모은 거라고요.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다 논의를 했으면 수석전문위원이 이것을 정리해야 되지 왜, 교섭단체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이지 이 신·구조문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은 수석전문위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섭단체에서 준비하면 교섭단체가 합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그것은 교섭단체안일 뿐이지.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회의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저희 입으로 드리는 거예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이 교섭단체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다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 아니요, 그럴 필요 없지요. 이미 다 검토보고서가 있단니까요.

○**박형수 위원**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 지금 봤는데?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박형수 위원 그 검토보고와 이것과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 그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박형수 위원 그것은 그쪽의 얘기지.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수석전문위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교섭단체에서 설명한 것에 지난번 논의할 때 그 논의사항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지를 검토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 부분은 저희가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고요.

○박형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내가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있잖아요. 왜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고 또 수석전문위원이 축조심사할 때 낸 예산안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무슨 수석전문위원 대변인이예요? 왜 남 답하는 것을 가로채 가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장으로서 제가 절차 진행한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절차 진행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끼어드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발언하는 거고 나는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었어요. 그것을 왜 위원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책임지고 진행한 거니까 대답을 드려야지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모든 사안을 다 위원장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한테 발언권을 준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래서 축조심사 다 마쳤다고 말했을 때 이의 없으셨지 않습니까?

○박형수 위원 무슨 소리, 지금 수석전문위원한테 내가 물어보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언제, 축조심사했느냐고 저에게 묻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아까 절차에 대해서 여쭙봤을 때도, 경과에 대해서 여쭙봤을 때도 아무 답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안 들어왔으니까 몰라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박은정 위원 경과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나가셨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나가셨잖아요.

○박형수 위원 내가 지금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어봤는데 대변인이 뭐 이렇게 많아요? 왜 자꾸 딴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박은정 위원 아니, 경과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나가신 것은…….

○소위원장 김승원 여기는 법안1소위원회고요, 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답변은 내가 위원장님한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했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추가로 드릴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지금 보완수사요구라든가 시정조치요구 그리고 재수사요구 같은 것은 저희가 이미 개정안을 예시문을 만들어서 소위자료에 넣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아까 체크해 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죽 보면서 의견을 드릴 사항은 체크해 놓았거든요. 좀 이따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바로 의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아무 저것도 없이 여기 지금 친구조문포 다 만들어 왔어요. 우리 그냥 하루 종일 헛소리하고 떠든 것밖에 더 돼요, 지금?

○김용민 위원 다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다 참고해서.

○박형수 위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민주당 안대로만 이렇게 해 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보고 여기서 이걸 듣고 있으라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보완수사권 주자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셨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속기의 편의를 위해서 한 분씩 발언권을 얻으시고요, 일단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245조……

○박형수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박은정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발언하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잠깐, 또 어디를 가세요?

○박형수 위원 내가 아까 얘기할 때는 실컷 끼어들어 놓고는……

○박은정 위원 조용히 하세요.

245조의8 재수사요구……

○소위원장 김승원 어디 가십니까, 또?

○박형수 위원 조용히 할 것도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심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박은정 위원 아니, 왜 말하는데 그러세요?

○박형수 위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다 정해 놓고 난 다음에 할 거면 뭐 하려고 우리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김태규 위원 병풍들 물러가겠습니다, 병풍들.

○소위원장 김승원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용민 위원 나갈 명분만 찾고 계십니까, 나갈 명분만.

○박형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를 쫓아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병풍으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박형수 위원 와서 하루 종일 얘기한 게 아무 소용도 없이……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가 그동안 논의했던 것을 대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처음 오셔서……

○김용민 위원 하루 종일 보완수사권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하셨어요?

○박형수 위원 아니, 그걸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그게 반영된 의견을 작성해야 되지.

○김태규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고 개별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여유나 기회가 있었으면 우리가 했지요.

○박은정 위원 지금 여덟 번 아홉 번 소위 하는 동안 안 오셨잖아요.

○김태규 위원 그건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김용민 위원 아니, 지금 하세요. 이 조문 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박은정 위원 그러면 하세요, 조문 보고.

○김태규 위원 지금 와 가지고 이 조문 던져 놓고 너희들 이제 내용 다 아니까 너희들이 따져 봐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박은정 위원 그동안 왜 안 오셨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으시면서 던져 놔다니요?

○박형수 위원 아니, 늦게…… 왜 우리가 늦게 들어왔어요? 법사위원장을 혼자 다 가져가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 여지껏 소위 속기록도 안 읽어 보고 오셨어요?

○박은정 위원 그동안 왜 안 오셨느냐고요. 여덟 번 아홉 번 할 동안 왜 안 오셨어요?

○김태규 위원 아니, 무슨 안드로메다 잤다 왔어요? 왜 안 들어왔는지 이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왜 여기서 다시 얘기하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 사과를 하셔야지. 세상에……

○박은정 위원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셨잖아요.

○김용민 위원 이럴 줄 알았어요. 속기록도 안 읽어 보고 와 가지고 깽판 칠 생각밖에 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박형수 위원 아니, 늦게 들어온 게 왜 우리 잘못이야?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니까 그런 거지.

○김태규 위원 읽어 볼 기회나 줬습니까, 지금?

○김용민 위원 속기록 읽어 보고 오셔야지.

○박은정 위원 아니, 여덟 번 아홉 번 심사하는 동안 안 오셔 가지고 지금……

○김용민 위원 속기록 읽어 보고 오시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7월 2일부터 25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도 관심을 안 기울이시고……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왜 가져가느냐고.

○김태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유 없이 안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들어올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는데도 안 들어왔습니까?

○김용민 위원 이유 없이 안 들어왔지요. 말도 안 되는 이유 대면서 이유 없이 안 들어왔지요.

세비 반납하고 나가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정말로?

○박형수 위원 됐어. 나가, 나가.

○김태규 위원 병풍들 물러가겠습니다, 그래.

○김용민 위원 이유 없이 안 들어왔으니까 세비 반납하고 나가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읽고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박은정 위원 위원장님, 소위 위원이 옆에 위원이 있는데 책상을 이렇게 치고, 저는

너무……

○**김용민 위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부터 좀 갖추고 들어오세요. 그렇지 않을 거면 들어오지 마시고요.

○**김태규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김용민 위원** 앞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품격을 지켜야지.

○**소위원장 김승원** 광규택 위원님은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까지?

(일부 위원 퇴장)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245조의8 재수사요구 규정 관련해서 2항에 보시면 ‘검사가 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고, 이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와 내용까지 통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수사요구를 하는 이유와 내용을 고소인에게 통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바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뭘 재수사요구를 했는지 넣어 가지고 고소인에게 통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260조(재정신청) 2항에 보시면 이게 신설되면, 원래 이전 조항에는 항고 이후에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재정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칠 때는 재기수사를 검사가 못 하기 때문에 경정처분으로 고쳐 냈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직접 경정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어 가지고 이 경정처분이 아니라 항고 이후 재수사요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검사가 재기수사를 못 하니까 재수사요구를 하고도 다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렇게 바뀌어야지, 경정처분이라는 것은 검사가 직접 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김승원** 다시 한번만, 문안을 어떻게…… 제안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문안을 2항 1호에 항고 이후 ‘경정처분이’ 이렇게 고쳤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경정처분이라는 것은 검사가 직접 경정하는, 수사해서 바꾸는 것을 경정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러지 않고 ‘항고 이후 재수사요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경정처분’을 ‘재수사요구’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김용민 위원** 그런데 꼭 재수사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박은정 위원** 그러면 ‘재수사요구 등’ 이렇게 바뀌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공소청법에 보면 항고절차에 기존의 재기수사를 경정처분으로, 검사가 스스로 처분을 바꾼 모든 경우를 경정처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그걸 지금 따라왔기 때문에……

○**박은정 위원** 아, 그렇게 같이 들어갔나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박은정 위원 그러면 그 경정처분에는 재수사요구해서 바꾼 것도 다 포함되는 조문으로 공소청법에 돼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렇지요.

○박은정 위원 그러면 그대로 뒤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저는 너무 사소한 오자인데요, 44페이지에 보면 9항에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수사 ‘요청’인데 ‘요구’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에 ‘요청’을 다 ‘요구’로 바꿨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 오타입니다.

○김한규 위원 너무 사소한 거라 민망하지만……

○박은정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예,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199조의2 3항에 보시면 수사기관, 각급 공소청의 장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사적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놔거든요. 그런데 ‘인사적 조치’라는 표현이 조금 불명확할 수 있어서 그냥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사적 조치라는 게 인력을 지정하고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 조치는 뭔가 다른 의미도, 약간 불분명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소위원장 김승원 이에 필요한 인력을……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그냥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승원 간명하게 하면 행정적 조치 안에 인사적인, 인력 지정·배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박은정 위원 예, 그렇기는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인사행정입니다. 그러면 인사도 행정에 들어가도록 넓게…… 아까 간사님 안에 각종 제재, 인사적 제재 부분을 넣으셨기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부드럽게 하려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박은정 위원 예, 행정적 조치로……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김남희 위원 행정적 조치로 가지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신 건가요?

○박은정 위원 예, 인사적 조치는 빼고 행정적 조치로만 해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원래 소위원장님이 낸 법안에 있었는데 꼭 인사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대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저는 간단한 거라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의견을 먼저……

○**김용민 위원** 기관 의견도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가 그동안 논의했던 과정을 지금 법안으로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기관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토할 시간이 짧았습니다만 일단 조문대비표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관련해서 지방공소청 외에 지청도 관할 기관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59조의2에 지청도 포함시켜야 된다, 예.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그것은 원래 저희가 공소청법에서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원칙적으로 각급으로 했었고요. 뒤에 보시면 지청은 별도로 표시해서 필요한 곳곳에 넣어놨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확정기록을 지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소청에 신청하는 형태로 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그러면 법무부에서 지청을 꼭 넣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저희와 협의를 해서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관련 조항입니다. 3항에 보시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할 합니다만 기록을 검토할 수단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그냥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이 경우 검사가 응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두는 것은 이 항목의 이행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195조 3항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이게 수사준칙에 있는 규정 아닌가요? 협력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양자간에……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사준칙에는 상호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 상호 협력하고 요청하는 경우에 상호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

짧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그 규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협력에 응해야 된다는 것과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법률적 판단에 관한 사항, 증거수집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검사가 응하도록 한다는 것이 무슨 자료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고 또한 이러한 과정들이 수사기록에 명시가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공백인 상태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부분은 운영의 묘가 있을 텐데요, 질의가 불명확하여 다시 재질의하라고 한다면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응해야 된다는 의무조항까지 뒤야 되는지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의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 규정을 안 두면 검사들이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답을 안 해 주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다음으로는 197조의2(보완수사요구) 3항 관련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면 조항인데요.

먼저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과 관련해서 지금 이 구조에 따르면 보완수사요구를 한 뒤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형제번호에서 불제번호로 바뀌게 됩니다. 즉 사건번호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사건번호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요 또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의 번호마저도 다르게 부여되도록 돼 있는데 사건번호 유지가 실질적으로, 이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고요. 무엇보다 앞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지금 검사가 경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즉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아까 형제번호, 불항번호라고 하셨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불제번호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요새는 불제라고 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불제, 이걸 병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가 이 취지는 그 사건이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어가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 관찰하거나 혹은 담당자가 끝까지 마무리하라는 취지인데, 그걸 사건번호를 병기해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6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6항?

○김용민 위원 예, 6항에서……

○소위원장 김승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만약에 송치로 보는 것을, 기소의견 송치를 불송치로 바꾼다고 하면 6항에 의해서 사전에 다 상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치를 하든 불송치를 하든 보완수사를 이행한 것을 보내기 전에 정리하게 되는, 사전에 상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관련해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권한과 관리책임이 분리되고 있다는 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번호 유지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고 등등으로 사건번호 유지를 반드시 명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신다면 이행 지연이나 수사 미진 등의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실질적인 관리 의무도 이행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 부분은 사건번호를 그대로 두게 되면 보완수사요구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리에 대한, 경찰에 대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정 위원 그 후에 조치 내용은 정계요구라든가 시정조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사건번호를 그대로 둬으로써.

○김용민 위원 독촉 이런 것들도 다 조치라고 봐야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그 부분이 시정조치까지 즉,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까지 이르지 않고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잠시 여기서 문구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문이 워낙 중요해서.

4항과 6항에 중복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4항에 보면 1개월 이내 요구하는 건 맞는데 결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제시했던 안에서 통보라는 용어가 빠졌고, 그러니까 ‘1항에 따라서 1개월 이내에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종합 수사 결과 내용을 정리해서 송부한다’ 이 내용이 6항의 전단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4항에 따른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를 통보, 4항에 통보라는 용어는 안 나왔는데 ‘통보하기 전에 그 이행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정리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고’, 결국 이행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4항과 6항이 중복적으로 규율되

고 있어서 조문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6항에다가 ‘4항에 따라 수사 결과를 정리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할 경우’ 이렇게 하면, 그걸 합치면 되지 않을까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래서 어떤 결과 처리에 대해서 중복된 내용은 합치고 기간 부분은, 저희가 이 내용을 약간 4항과 5항·6항을 구분해서 결과치를 어떻게 하는지 조문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4항과 6항의 중복되는 부분을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건 체계·자구 정리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체계·자구 정리인데요. 사실 6항은 사법경찰관이 4항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종합 수사 결과를 정리해서 검사에게 송부하기 전에…… 그 수사 결과를 정리해서 검사에게 송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해 주어서 그 사건기록을 먼저 본 검사가 이행 결과에 대한 그걸 받도록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설계가 된 건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행 결과를 그냥 보내기 전에 사전에 검사랑 협의를 해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아마 전문위원께서는 표현 자체가 중복되는 것들이……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김용민 위원 예, 그렇게 보이는 게 있으니 이건 차라리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 버리든가, 4항과 6항을 합쳐서 하나의 항으로 정리를 해 버리든가 아니면 4항이 뒤로 가서 정리를 하든가 하는 이런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김한규 위원 맞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법무부차관께서 보완수사요구의 실질화 방안 중에 네 번째의 두 번째 사항으로 얘기하셨던 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평풍이 될 것 같아서 수리 여부 결정권 이런 걸 주는 것보다는 사법경찰관이 미리 검사에게 자료를 보내서 상의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마련한 조항이었지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취지로 문구 수정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조의4(수사의 경합) 관련입니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에 최소한 이게 어느 기관에 설치를 할 것인지 정도는 법률에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 관할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수사권 그리고 관할 유무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청에 설치하는 등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형소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다음, 220조의2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계좌영장의 집행이라든지 여러 집행을 모두 포괄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모두 영상녹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김용민 위원** 단서조항으로 뺄 수 있게는 해 놓았는데, 그걸 고려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들이 또한 임의제출의 형태인데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관계자들이 다 영상녹화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범위를 좁힐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이것은 ‘영장 또는 216조·217조에 따라, 강제처분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이기 때문에 압수·수색·검증에 한정해서 범문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래서 그 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그 범위를 단서도 넣었고 5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충분히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부분 우려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상세히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관련입니다.

고발인 이의신청을 허용하면서 직접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등을 요건으로 두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위임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항 관련해서는요.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 송부일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받을 것인지 여부가 경찰관서장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송치 송부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의신청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예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보완하는 규정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현실적인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은 일종의 제척기간으로서 저희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단서조항처럼 정했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일단 차관님 의견은 참고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6개월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을 때 이게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뒤늦게 제출된 것이라는 것을 관서장이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의신청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여기 불만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일견 보여지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차관님은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되겠는지 안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그냥 6개월로 관서의 장이 정하지 않고 송부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의신청 등이 있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 허가 기간을 허용하는 규정들은 몇 가지 유형이 있고요. 제1항의 경우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이의신청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박은정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런 형태의 조문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용민 위원**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너무 길게 불확정한, 불완전한 지위에 노출돼서 그래서 저희가 6개월로 논의해서 정한 겁니다.

○**박은정 위원** 고소인의 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항소권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겠다, 사실상 공소시효까지 길어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6개월로 한 정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행정심판 보면 행정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차용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조항입니다.

2항에서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은 특사경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고 한 뒤에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도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에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협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3항에 따르면 개시·진행의 경우에만 특사경의 판단에 따라서 요청이 있는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 지도·조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는지가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조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개시·진행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종결 시 지도·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도·조언이 함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특사경은 전건송치하기로 했는데……

○**김용민 위원** 송치를 하잖아요, 현행법에 따라서.

○**김남희 위원** 예, 송치를 하니까.

○**김용민 위원** 현행법에 따라 다 송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건송치 부분이 들어왔는데요.

○**김용민 위원** 그건 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 법무부차관 이진수** 온 다음에 다시 내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굳이 이렇게 개시·진행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 박은정 위원** 그러면 종결까지 넣어야 된다는 건가요?
-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 김남희 위원** 아니면 개시·진행을 빼고 수사를……
-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차관님, 저희가 개시·진행은 뺐고요.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 김용민 위원** 그러네요,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수사를 하여야 한다……
- 김용민 위원**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조언 다 들어간 겁니다.
-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반적인 지도·조언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문안이 성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은정 위원** 그러면 개시·진행이 아닌 걸로……
-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민 위원** 그리고 대통령령은 1항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요,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1항에서 대통령령이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만 되어 있어서……
-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지도·조언도 협력의 범위로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지휘관계는 아니니까, 협력관계로 설정을 해도 됩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말씀대로 지도·조언도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이 법 취지는 그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은 회의록에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 취지는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예.
- 법무부차관 이진수** 조금은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요. 아니,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제 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관련해서 검사가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고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맞습니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판례 등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라고 성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 김용민 위원** 예, 그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 김남희 위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잠시 넘어가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 등’에서, 이것은 법원에서 좀 보셔야……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3항에 보시면 ‘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과 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해서 취득한 진술·자료’, ‘등’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등’은 빼

셔도 될 것 같고요. 1항, 2항에는 진술과 자료밖에 없어서 ‘1항, 2항에 따라서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4항에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밖에 검사는 사건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넓습니다—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박은정 위원 그 부분은 증거능력을 3항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4항과 관련해 가지는 아마 이게 이렇게 기록이 편철되어 가지고 기소가 되면 그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판단을 이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일반적인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일반적인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원행정처차장님 어떠신가요? 이렇게 입혀지는데 지장은 없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이 부분은 방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등’을 ‘자료를’로 바꾸고 4항은 유지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객관의무는 ‘정당한 이익’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차관님, 다음 의견……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리고 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관련해서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327조……

○법무부차관 이진수 공소기각의 판결 관련해서요 2호, 3호가 신설됩니다. 3호 관련해서 기존 판례에 따른 요건들이 세 가지 요건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부분은 세 가지 요건 중의 한 가지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의적 판단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로 해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 부분은 현재 판례에 비추어 봐서 추가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김용민 위원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만 해도 견제 효과하고 함부로 공소제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또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단은 현안을 유지하되 차관님 의견은 한번 더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이 문구는 저번에 법원의 의견을 받아서 문구가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일단 급하게 검토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주 상세하게 잘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위원장님, 하나만 그러면 마지막 ‘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와 관련해서—3호입니다—‘피고인·증인의 소재의 확인’이라고 들어갔는데 이 건 엄격히 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 소환장이 발부된 증인’을 의미한다고 이해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문구를 넣어도 되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동의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문구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차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신청에 한해서 세 가지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몇 조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일단 간단한 것부터 순서와 상관없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부칙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6개월 후 1년인데 적절한 의견을 늦지 않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용례는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법원에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신청된 사건부터 한다면 그런 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하나 간단한 게 262조 4항에 즉시항고의 대상 법원이 대법원이라는 것이 명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62조 4항은 현행과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는 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415조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대법원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4항에다가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고 넣으면 더 분명해 질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현행 262조 4항……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지금은 고등법원이나 다분히 대법원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지방법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명시해 달라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명시해 줘야지 나중에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 그렇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고발인까지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법원의 업무 부담은 떠나서라도 특히 2호와 4호 부분은 이미 피해자가 고소인이어서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부분에서는 고발 의무가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고발인이 재정신청할 실익이 있는데 과연 그 실익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고 또 이렇게 고발인에 의해서 재정신청이 진행될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들이 또 한번 이런 절차에 놓이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를 원하시면 저희 사법지원총괄심의관으로 하여금 2~3분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심의관님, 어디 계신가요?

속기를 위해서 정확한 직위와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보현** 안녕하세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보현 판사입니다.

260조 고발인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재정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범죄들 중에서 1호는 기존에 있었던 범죄이고 2호와 4호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개별법에서 신고의무자를 두고 있는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신고·고소 또는 재정신청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는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극히 개인적인 범죄이고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삼자인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해서 그 절차에 끌고 가는 게 오히려 피해자를 사건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오히려 더 이상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싶었는데 재정신청이 들어가고 재정신청은 현행 제도상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0.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재정신청을 거치고도 결국은 기소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와 반하여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 재기수사나 재고소 등을 통해서 다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정신청을 통해서 기소가 되었는데 그 경우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해자의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다시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고발인에게 확대하는 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아주 실효적이라고 보이지 않아서 제외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 1호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의무신고자에 한정해서 고발인에게 재정신청을 허용해 주심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보현** 예.

○**김한규 위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궁금한 건 그렇다고 하면 제삼자가 성범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정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한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보현**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재정신청보다 제삼자의 고발이 훨씬 더 많은 사건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고발 중에서 일부가 재정신청을 할 테니까. 그러면 스토킹이나 성범죄는 고발도 금지해야 된다는 결론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보현** 우선 저희가 이런 사안에서 무조건 전부 다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토킹이나 성범죄의 경우에도 고발인에게 재정신청을 허용했을 때 분명히 암장되는 사건이 발견되는, 이익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에 대해서는 범죄를 한정하지 않고 하고 있지만 재정신청은 고발과 재정신청, 선택적인 관계가 아니라 중복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을 허용한 것에 더해서 중복적으로 재정신청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김한규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인데 과도하다는 거지 저는 논리적으로 고발은 가능한데 제삼자가 재정신청은 안 된다는 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성폭력법 범죄에 관련돼서도 지금 신고의무가 있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보현** 아청법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신고의무 규정은 있긴 하거든요.

○**박은정 위원** 그건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방지법에 있는 건 다른 범죄 아닌가요?

○**김남희 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아, 이건 다른 법 문제구나.

○**박은정 위원** 예,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리 있는 말씀이시기는 하고 고발인의 재정신청이 확대되는 문제는 있는 또 저희들이 피해자단체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이번에. 그랬더니 피해자단체들이 이 재정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고소의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는 기관·단체의 고발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보현** 제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기관 고발 같은 게 있었던 사건은 아청법이나 장애인복지법으로도 포섭이 되는 범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일반 성폭력피해자인데 그냥 단체 고발을 하는 사례들이 꽤 있어서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 재정신청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보현** 송구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한 가지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보현** 예.

○**소위원장 김승원** 2호 성폭력범죄, 2호에 따른 범죄 중의 일부를 보면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와 공연음란죄가 있는데 이것까지 사실 재정신청을 인정하는 것은 좀 범죄의 죄질이나 태양에 비추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는 들긴 합니다.

나머지 각 호의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한 범죄나 위원님들 재정신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시민단체에서도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위원님들 여기 주신 대로 원안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추가……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보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의무신고자에게 제한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대안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원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무신고자가 아닌 이 범죄 전체에 대해서 고발인에게 열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신데 이것은 고발인이 굉장히 다수가 있을 여지도 있고 한 사건에서 중복된 고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7년도에 고소인에게 재정신청을 허용했는데 그 전만 해도 1년에 오류백 건 정도 되던 재정신청이 작년 기준으로 2만 9774건이었고 인용률은 0.4%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기준과 유죄판결의 기준은 좀 다르다 보니까 법원에서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가 없거나 재수사를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신청 단계에서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서 인용결정을 해도 사실 형사 본안재판에서는 무죄가 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성폭력 피해자에게 혹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인지, 구인하는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다 불러 나와야 되는데 그게 더 고통스럽지 않은지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사법지원실장님이시지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보현** 총괄심의관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총괄심의관이시지요.

저희들도 법안 성안 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면……

박균택 위원님 혹시……

○**박균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희가 피해자 단체를 만났을 때 재정신청에 대한 요청도 많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금 심의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재정신청 인용률이 너무 낮고 그래서 재정신청을 하기보다는 재정신청이 안 되고 새로운 증거를 불기소하지 않는,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를 해서 다시 재고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해 주라 이런 요청도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신청보다는 피해자 구제가 좀 다른 방식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7대 범죄를 전부 다 포함시켰을 때, 재정신청에 포함시켰을 때 인용률은 매우 낮으면서 사건은 굉장히 늘어나고 피의자는 재정신청까지 계속 가게 되고 또 제3자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하고 반해서 고발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의무신고인으로 축소하는 이런 법안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원안 유지하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한번 기관 의견 듣고 최종 결정하실까요?

○**박균택 위원** 어떻습니까, 차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는 의견의 하나로서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그냥 어떤 생각 중의 하나, 의견 제시 차원의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와서 바꾸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강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 보호의 취지가 오히려 퇴색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그러면 지금은 넣어서 가시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수정하실까요?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는 방안은 어떠십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도 있겠네요.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김용민 위원** 그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은 내일 아침 9시에 저희 비공개회의 할 테니까 오셔서 의견 충분히 개진하시고요. 거기서 또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법무부차관님, 형집행 등과 관련해서 공소청 직원들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부분들, 494조라든가 이 조문들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존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에서는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내용이면 형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범죄인 인도라든가 또 범죄수익 환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법공조에 관한 업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도 특별한 하자는 없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죄수익 환수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범죄수사를 하는 방법이……

○**박균택 위원** 아니아니, 수사로서의 범죄수익 환수가 아니고 어떤 형집행의 방식으로서의 범죄수익 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수익 환수는 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형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추징이라든가 이런 걸 집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법무부차관 이진수** 재산형 집행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검찰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명이라고만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지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직명 같은 것들이나 직책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형집행관이라고 지명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신분증을 발행할 때 사법경찰관이라는 신분증을 따로 발급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어떤 직명 같은 것이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뭐로 지명을 할 것이냐,

이 법에 나온 임무를 다 쓸 수도 없는 것이겠고, 명칭 부분도 조금……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수사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조문만 있어도 합당한 직명 같은 걸 찾아서 부여할 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형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를 들어 지명수배 문제가 있다든가 그리고 미집자 검거를 할 때 그 미집자가 조폭의 일원이라든가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된 협조 조항 내지는 지휘 조항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필요가 없을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조항이 반영된다면 현장에서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명수배 의뢰하는 절차라든가 또 검거 과정에서 협력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 있을 텐데, 이것도 내일 의견을 세부적으로 줄 만한 것이 있으면 소위원장님께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침 일찍.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감사님, 하나만 좀 요청드립니다.

41페이지 고소인 이의신청에……

○**소위원장 김승원** 몇 조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245조의7, 고소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고발인 부분을 대령으로 위임하면서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령으로 정하는 범죄’인데 여기 한두 개 예시를 넣으면 좀 더 포괄위임의 여지가 줄어들 것 같은데 예시 한두 개는 어떤 범죄를 넣었으면 하는지, 범죄 한두 개 넣으면 위임 범위가……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은 김한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형법에 보면, 제7편 제1장이나 23장까지 보면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들을 염두에 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있는데 그 직무유기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 조항을 토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두 가지일 텐데요. 일단 법익 자체로 범죄를 제한하고 또 그 범죄 위반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서 범죄 피해자라고 준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걸 염두에 둔 거라,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굳이 법에 넣을 필요는 없고 지금 논의한 것이 속기록에 있을 테니까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만들 때 정부에서 이런 취지로 형법에 국가

적 법익, 사회적 법익에 해당하는지하고 개별법에도 비슷한 취지로 비슷한 법익을 갖고 있는 조항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넣으면 어떻겠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는데 이런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은 실질적으로 국민 다수 또는 다중이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느끼기는 하는데 법적으로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어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아마 판례에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고죄, 그다음에 위증죄 이게 피해자가 없는데, 법상으로는 피해 법익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 피해자들은 있잖아요. 무고의 피해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 그리고 법왜곡죄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의 행사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공문서 행사 자체의 법상 피해자는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이의신청제도는 저희가 어떻게 중간에 판단이 못 들어갑니다, 바로 접수가 되면 송치가 되는 거라서. 나중에 대령으로 정할 때 국가적 법익적 침해 중 바로 그냥 피해자가 특정되는 그런 사건으로 대령에 위임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 부분은 김용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각 범죄를 열거하는 식의 조문도 논의가 있었고요 또 김한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와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와 같이 규정하는 한 장짜리 자료에 기반한 논의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일 의견을 주시면 좀 더 가다듬을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오늘 의결을 하려면 뭔가 안을 정해서 통과는 시키고 내일 전체 회의에서 필요하면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이 원안대로 유지하고요.

○김용민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의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에서 수정하셔도 되는 것 아니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지금 내용 정리된 건 조문 정리 그리고 아까 말한 조문을 합하고 이런 부분 체계·자구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조문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위원장님께 위임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한 가지 법무부차관님께 의견을 여쭙보겠습니다.

12페이지인데요. 제197조의4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인데 아까 차관님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어디에 들지는 대략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법무부가 생각할 때는 어느 기관에 두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보고 싶어요. 아까 예를 들면 공소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공소청이 수사를 하지 않는데 공소청에 두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러 수사기관들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국수본이나 중수청을 관할하고 있는 행안부에 뒤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법무부에 뒤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서 법무부에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 가지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각 기관에서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의 특성에 맞는 수사기관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의원님들 안 중에서는 국무조정실 등도 여러 가지 수사기관 간 다툼이 있었을 때 기관을 두는, 하나의 기관으로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총리실이나 국조실 등에 두는 것은 수사업무의 특성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영장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되는 공소청에서 그 사건의 범죄 특성 그다음에 법리적인 부분, 권한 유무 그다음에 관할의 적정성까지 판단을 해서 공소청에 협의회를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부차관 이진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한 가지만요? 예,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260조(재정신청) 관련 제2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공소청법에서 2조1항에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부분이 경정처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경정처분의 개념이 항고 등이 들어온 다음에 고등검찰청이건 지방검찰청 검사가 주문을 변경하는 게 경정처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정처분의 개념하고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재기수사를 유지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재기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유지하면서 주문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고 이후에 사건이 제기된 다음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등으로 이 두 경우를 다 포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사건이 제기된 다음……

○**법무부차관 이진수** 문언이 ‘항고 이후’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사건이 제기된 이후 혹은 다음 이게 더 적절한, 이후?

○**법무부차관 이진수** ‘다음’이 더 문언상으로는 나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 다시 공소를, ‘다음에’라고 해야겠네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사건이 제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승원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그리고 아까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수처 같이 독립적인 기관도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특정 서술을 하기보다는 지자체 간에도 협의회를 만들 때 대등한 지자체 간에 협의회를 둔다는 입법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행정부 안으로 공수처가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수사기관 간의 수사 관할에 관한 협의 조정을 위해서 수사권관할조정협회를 신설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저희가 일단은 자구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 간에 서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자발적으로 서로 모여서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결론이 날까요?

○박은정 위원 합의하기 나름이지요.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김용민 위원 일단 그렇게 출범을 해 보지요.

○김한규 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 표현을 어떻게, 2항을 말하시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김한규 위원 197조의4 2항을 정확하게 어떻게 바꾸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우선은 법문을 1항, 2항으로 하나 더 만들고요.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기관 간의 범죄수사 관할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수사권관할조정협회를 둘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각 수사기관의 장은 이런 조정협회에 이런 내용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김용민 위원 1항을……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1항을 설치 근거, 2항은 각 수사기관의 장이 협의회에다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3항도……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2항이 3항으로 밀리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실……

○김남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245조의11의 2항에 기한을 넣는 것이……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처음에 저희가 서영교 의원안이 14일로 되어 있어서 14일로 했습니다.

○김남희 위원 14일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원래 있었는데 이게 빠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되 이 중 의사일정 제9항 정점식 의원안의 법률안은 소위에 계류시키고 의사일정 제5항

부터 8항까지 및 10항부터 1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의 구체적인 법문과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숙 차관님, 기우중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남희 김승원 김용민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형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